碩士學位 請求論文
指導敎授 姜錫中 博士

衣類製品 貿易紛爭의 解決事例에 관한 硏究

(A Study on examples of settlement to trade disputes in clothing products)

1992年 8月

漢城大學校 經營大學院

經 營 學 科

李 載 河

衣類製品 貿易紛爭의 解決事例에 관한 硏究

(A Study on examples of settlement to trade disputes in clothing products)

指導 姜 錫 中 博士

이 論文을 經營學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2年 8月 日

漢城大學校 經營大學院

企業管理 專攻

李 載 河

論文認准書

李載河의 經營學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92年 8月 日

審査委員

委員長 印

委 員 印

委 員 印

感謝의 글

지난 학업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오늘의 작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이 시간까지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대학원 생활을 해오면서 학문에 대한 용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姜錫中 교수님 그리고 이 논문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많은 시간을 기울여 세심하게 지도해 주신 권오 교수님, 심사를 맡아주신 김평광 교수님, 또한 학문을 하는 대학원생으로서의 강한 도전감을 심어주신 최명규 원장님, 김원중 교수님의 가르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항상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과 형제의 사랑에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또한 이태우 학우와 논문을 함께 쓴 이수경, 고순계 학우에도 고마움을 드립니다. 끝으로 학문을 하는 동안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잘 인내해준 사랑하는 아내와 딸 지윤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1992년 8월

이 재 하

目　　次

第 1 章　序　論 ---------- 1

　第 1 節　研究目的 ---------- 1

　第 2 節　研究方法 및 範圍 ---------- 2

第 2 章　貿易紛爭의 意義와 種類 및 原因 ---------- 3

　第 1 節　貿易紛爭의 意義 ---------- 3

　第 2 節　貿易紛爭의 種類 ---------- 4

　第 3 節　貿易紛爭의 原因 ---------- 6

　　1. 直接的 原因 ---------- 6

　　2. 間接的 原因 ---------- 9

第 3 章　衣類製品 貿易紛爭의 解決方法 ---------- 14

　第 1 節　貿易紛爭의 豫防 ---------- 14

　第 2 節　雙方間의 調整 ---------- 16

　　1. 意義 ---------- 16

　　2. 請求權의 抛棄 ---------- 17

　　3. 和解 ---------- 18

　第 3 節　第3者의 介入 ---------- 19

　　1. 調停 ---------- 19

2. 訴訟 ---------- 20
3. 斡旋 ---------- 21
4. 仲裁 ---------- 23
第 4 節 仲裁制度의 活用 ---------- 24
1. 商事仲裁의 槪念 ---------- 25
2. 仲裁制度의 長·短點 ---------- 27
3. 商事仲裁의 機能 ---------- 31
第 5 節 貿易紛爭의 轉嫁 ---------- 33

第 4 章 衣類製品 貿易紛爭 解決事例 ---------- 36
第 1 節 衣類製品의 貿易現況 ---------- 36
第 2 節 衣類製品 貿易紛爭 事例 ---------- 41
1. 品質不良紛爭 解決事例 ---------- 41
2. 數量紛爭 解決事例 ---------- 50
3. 船積紛爭 解決事例 ---------- 56

第 5 章 要約 및 結論 ---------- 63
參考文獻 ---------- 66
Abstract ---------- 70

圖·表 目 次

圖 目 次

〈圖 2-1〉 우리나라 衣類製品의 클레임 發生原因 ---------- 12

〈圖 4-1〉 우리나라 衣類輸出의 流通構造 ---------- 37

表 目 次

〈表 4-1〉 衣類産業의 品目別 輸出方式의 比較 ---------- 36

〈表 4-2〉 年度別 衣類製品 輸出 推移 ---------- 38

〈表 4-3〉 衣類産業의 品目別 輸出推移 ---------- 39

〈表 4-4〉 品目別 紛爭 發生現況 ---------- 40

第 1 章 序 論

第 1 節 硏究의 目的

오늘날에 있어서의 貿易去來는 經濟生活의 領域이 擴張되고 貿易去來量이 增加함으로써 全世界的으로 확대되었고, 따라서 그 性格 또한 複雜多樣하게 변화되어가고 있으며, 國際貿易量이 증가함에 따라 去來當事者間에 발생되고 있는 貿易紛爭의 件數도 매년 증가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우리나라는 輸出增大와 더불어 貿易紛爭도 계속 增加해 왔으며, 더구나 輸出品目이 一次産品이나 輕工業製品 위주에서 점차 重化學工業製品으로 이전되어감에 따라 輸出規模가 大型化되고 貿易紛爭도 大型化되고 있다. 이런 紛爭의 빈번한 發生은 對外信用을 상실케 하여 輸出發展을 저해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애써 벌은 外貨도 낭비하게 된다.

따라서 貿易去來에 있어서는 契約締結時에 세심한 배려를 하여 각종 去來條件을 잘 선택함으로써 紛爭을 최소화하고, 피치못할 紛爭의 발생에 대해서 最善의 解決方法을 모색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본 논문의 目的은 衣類製品貿易去來時 발생된 분쟁의 事例를 통하여 날로 무역량이 증가함에 따라, 貿易紛爭의 위험성이 더해가는 사실에 인식을 깊이하고, 1982년부터 1988년까지 1980년대의 貿易紛爭의 품목별 분류와 그리고 최근의 1990년 부터 1992년 4월까지의 분류를 보면 件數면에 있어서 의류제품과 관련된 섬유직물류가 중·화학제품 다음으로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히 衣類製品 貿易去來上의 貿易紛爭 가운데 해결사례를

제시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의류제품 貿易去來시 현재 혹은 미래에 발생할 紛爭의 신속하고, 합리적이며, 경제적으로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본 논문의 목적을 두고자 하였다.

第 2 節 硏究의 方法과 範圍

國際貿易去來에 있어 貿易紛爭의 發生은 事前에 미리 방지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衣類製品 貿易去來上 貿易紛爭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계속적인 去來關係維持에 지장이 없도록 효과적이며, 신속한 처리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衣類製品 貿易去來上 貿易紛爭이 제기된 것에 대해 紛爭解決事例를 통해 解決方案의 모색을 硏究의 目的으로 하는 本 論文은 範圍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第1章 序論에 이어, 第2章에서는 貿易紛爭의 意義와 種類 및 衣類製品 貿易上의 紛爭原因을 살펴보며, 第3章에서는 衣類製品 貿易去來시 발생되는 무역분쟁의 해결방법을 여러측면에서 중점적으로 고찰하며, 第4章에서는 衣類製品 貿易紛爭의 解決事例를 提示하여 紛爭의 發生經緯와 處理經緯과정을 살펴보며, 분쟁사례에 대한 문제점도 언급하고자 한다. 第5章에서는 本 論文을 要約하고 結論을 맺도록 하였다.

本 論文의 硏究方法으로는 國內外의 參考文獻과 論文을 통하여 고찰하는 방법을 택한다.

第2章 貿易紛爭의 意義와 種類 및 原因

第 1 節 貿易紛爭의 意義

모든 국가는 어떠한 形態로든지 다른나라와 貿易을 하고 있지 않은 나라는 거의 없을 정도이다. 國家와 國家사이의 經濟的 交流는 점점 심화되고 있으며 따라서 서로 去來되는 物品의 종류 및 수량도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다. 더구나 商品去來 뿐 만 아니라 근래에는 技術貿易 (Technical Trade)이라 하여 外國과의 사이에 技術提携를 체결하고 그 댓가로 일정한 보수를 취득한다든가, 이와 관련하여 국제간의 資本移動이 이루어져 外國資本의 流入 및 海外投資(Foreign Investment)로 발전하는 事例도 증가되었다.

外國貿易이 國內去來와의 차이점은 言語, 慣習, 法律, 通貨 등을 달리하는 나라와의 去來라는 점이다. 따라서 國內去來에서는 볼 수 없는 복잡한 요소가 얽혀져 있다. 예컨대, 代金決濟는 대부분 國際通貨(International Currency)인 미국의 달러, 영국의 파운드, 독일의 마르크 혹은 프랑스의 프랑 등 去來相對國의 通貨에 의하는 경우가 많으며 商談이나 契約書의 작성에 있어서도 英語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의사소통의 불충분으로 인한 여러가지 紛爭(Dispute)이 발생되기 쉽다.[1]

貿易上의 紛爭을 일반적으로 클레임이라고 하고 있으나, Claim이라고 하는 英語의 語源은 라틴語의 "Clamare"이다. 이는 "to cry out", 즉 "큰소리로 울부짖다" 또는 "要求하다"라는 뜻에서 유래된 말이다. 오늘날에는 우리

---

1) 森井清, 「貿易クレームと對策」, 東京 : 日本經濟新聞社, 1976, p. 9.

나라에서도 貿易業務上 外來語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이다.

貿易클레임을 廣義로 해석하면 賣買契約을 이행하는데 있어서의 紛爭(Dispute), 紛議(Trouble), 錯誤(Mistake), 支障(Accident), 잘못됨(Going wrong), 誤解(Misunderstanding)등이 포함된 不平不滿(Complaint)의 모두가 클레임에 포함된다. 즉, 去來의 개시로 부터 오퍼(offer)의 교환, 契約締結, 約定品의 船積, 어음의 취결 및 引受, 支給에 이르기 까지 거래가 아무런 지장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되고 이행되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거래 과정에서 거래상대방과의 사이에 事故의 大小를 불문하고 어떠한 문제를 발생하였을 경우를 일반적으로 클레임이라고 한다. 그러나 책임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다든가 구체적으로 損害賠償請求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불평불만 및 이와 비슷한 문구는 法律上 내지는 貿易去來上에서도 정확히는 클레임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2] 따라서 클레임의 뜻은 當事者간의 거래계약에 따라 이행하면서 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발행되는 손해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3] 이러한 貿易用語로서의 클레임은 상당히 많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損害賠償請求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第 2 節 貿易紛爭의 種類

貿易紛爭은 성질을 기준으로 다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

2) 早川廣中·小林 甫, 「現代貿易の知識」, 東京 : 廣文社, 1979, p. 257.
3) 오세창, 「무역실무론」, 박영사, 1990, pp. 699-700.
「수출입업무요람」, 한국무역협회, 1987, p. 298.

① 일반적 클레임, ② 마케트(market) 클레임, ③ 계획적 클레임으로 분류된다.

1. 一般的 클레임

去來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클레임으로서, 賣買當事者중 일방의 과실 또는 태만에 의하여 발생되거나 當事者 이외의 제3자에 의해 야기된다. 제3자에 의해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 예를 들어 클레임의 발생원인이 製造業者나 供給者 또는 運送業者등의 귀책사유일 경우에는 被提起者(claimee)는 당해 클레임에 대한 책임자를 찾아내어 그 책임자에게 자기가 제기받은 클레임을 전환할 수 있다.[4]

2. 擬裝的 클레임

買受人에게 거의 損害를 입히지 않는 정도이거나 또는 그 손상이 경미하여 평소 같으면 클레임이 되지도 않을 정도의 적은 과실을 減價의 구실로 하는 클레임을 말한다. 이런 종류의 클레임은 상담의 成立 후에 市價가 하락하는 경우 貿易道德心이 낮은 買受人에 의해서 가끔 남용된다. 요컨대, 수입대금을 깎으려는 買受人의 요구가 클레임으로 擬裝된 것이다.[5]

3. 計劃的 클레임

賣買當事者의 순전한 惡意에 의한 것으로서, 예컨대 買受人이 처음부터

---

4) 이를 클레임의 轉嫁라 하며, 貿易業者의 立場에서는 클레임의 轉嫁는 自己防衛上 必要한 것이므로 매우 중요하다.

5) 錢昌源, 「新稿 貿易實務」, 日新社, 1991, pp. 706-707.

교묘한 계획으로, 작위적으로 賣渡人의 契約이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데서 기인한 클레임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클레임은 일시적인 변태현상이지 일반의 貿易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賣買담당자가 상호의 신뢰를 기초로 한 단골 去來관계에 입각하여 매장去來를 행하게 되면 자연히 소멸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貿易上의 紛爭은 마침내 일반적 클레임의 문제로서, 그 防止 및 해결에 귀착된다고 할 수 있겠다.

第 3 節 衣類製品 貿易紛爭의 原因

人間이 사회생활을 하는데는 時間과 場所를 가리지 않고 어떤 분쟁의 발생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특히 국제 貿易去來에서 외국과 去來를 하는 경우에는 국내去來에 비하여 紛爭의 가능성은 더욱 커지며, 또한 貿易去來에서는 여러가지 특수한 사정이 서로 얽히어서 클레임이 발생된다.[6] 貿易去來시 이 클레임의 발생원인에는 直接的 原因과 間接的 原因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들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考察하면 다음과 같다.

1. 直接的 原因

(1) 商談에 원인이 있는 경우

廣義의 貿易商談(Business Negotiation)에는 상대방의 市場照會(Inquiry for market) 需要供給의 照會, 見本(Sample)이나 카타로그(catalog)의 송부, 견적 (Estimation)의 의뢰 및 제출, 가격(price)의 조회등도 포함되지

6) 律田昇, 「貿易クレームの研究(上)」, 東京 : 通商産業調査會, 1964, pp. 11-14.

만, 상담이 구체적으로 진행될 때에 그 중추적인 교섭은 이른바 오퍼(offer)와 이에 대한 승낙(Acceptance)이다. 이 가운데서 오퍼는 "販賣하겠다" 또는 "買入하겠다"라는 seller 또는 buyer의 의사표시(Expression of Intention)이며, 그 의사가 확정적으로 표시된 것을 確定 오퍼(Firm offer)라고 한다. 이에 반하여 그 의사가 불확실한 것 또는 조건부일 때에는 이른바 條件附 오퍼 (Conditidnal offer) 라고 한다. 후자의 예로서는 先着順販賣條件附 오퍼(offer subject to prior sale), '最終確認條件附 오퍼' (offer Subject to Final Confirmation) '豫約不能 오퍼'(offer without Engagement) 등이 있다. 이들 오퍼의 종류를 잘못 이해하여 계약 유효하게 성립되었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상대방과 다툼을 야기하여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確定 오퍼는 오퍼의 제공자를 일정기간 동안 拘束(Bind)하며, 상대방이 그 기간내에 승낙한다고 회답하면 즉시 계약이 성립되므로 確定 오퍼중의 모든 조건(Terms and conditions)에는 後日에 계약의 내용이 될 중요한 조건을 전부 포함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만약 중요한 조건이 누락되어 있거나 또는 애매하고 분명하지 않은 채로 그 오퍼가 승락되어 후일에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매우 많다.

한편 承諾 (Acceptance)도 확정적인 意思表示이다. 그러나 오퍼의 일부의 조건을 변경하여 승락하는 이른바 조건부승락 (Conditional Acceptance) 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에 승낙이 아니고, 일종의 反對오퍼(Counter offer)이다. 따라서 승낙과 조건부승낙을 혼동하여 그 결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그밖의 商談時의 과실(fault), 오해(misunderstanding), 착오(default),

부주의(carelessness) 등이 원인이 되어 클레임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2) 契約에 원인이 있는 경우

오퍼나 승낙의 條件이 치밀하지 못하면 반드시 계약서의 작성, 署名(Making and Signing of Contract)時에 분쟁이 발생된다.

원래부터 계약은 口頭에 의한 것이나, 文書나 電信의 왕복이 있었다 하더라도 양 당사자의 합의만 있으면 法律上으로는 유효하게 성립되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불완전한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후일의 立證을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 서명하여 서로 교환해 두는 것이 일반적인 國際商慣習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文書나 電信의 왕복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의 주요 조건중에서 어느 한 조건에 관하여 Seller, Buyer의 양 당사자 간에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 그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契約을 체결할 때에는 그 주요조건인 품명(Article), 품종(description), 포장(Packing), 수량(quantity), 가격(Price), 선적시기(Time of shipment), 보험조건(Insurance terms), 대금의 지급조건(Payment terms), 신용장의 조건(Terms of L/C) 검품검량(Inspection of quality and quantity)의 방법 불가항력(Force majeure), 중재조항(Arbitration Clause) 등에 대하여 명확하고도 확실한 합의를 보아야 하며 이들 중 어딘가에 조금이라도 의문점을 남겨서는 안된다. 따라서 賣買契約書(Sale contract : contract note)를 완전하게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을 이행할때나 또는 이행한 다음에 반드시 클레임이 발생하게 된다.

(3) 契約의 履行에 原因이 있는 경우

계약의 이행에 원인이 있는 경우는 매우 많다. 그 발생원인의 대표적인

것을 들면 다음과 같다.

ⅰ) 선적 지연(Delayed Shipment), ⅱ) 품질(Quality) 클레임 ⅲ) 수량(Quantity) 클레임, ⅳ) 검품 및 검량(inspection of Quality and Quantity) 클레임, ⅴ) 포장(packing) 클레임, ⅵ) 적재(Ship's Storage) 클레임, ⅶ) 대금불지급(non Payment) ⅷ) 신용장의 불발행(L/C being not issued) 클레임, ⅸ) 보험(insurance) 클레임, ⅹ) 신용장의 발행지연 또는 부당한 신용장(L/C being Delayed or on inappropriate)에 관한 클레임, ⅹⅰ) 수수료 불지급(Commission being not paid) 클레임 등이다.[7]

2. 間接的 原因

間接的 原因은 使用 言語의 相異, 國際商慣習과 國際條約에 대한 無知, 準據法의 相異, 隔地間 去來에 따르는 運送上의 危險, 信用調査의 不完全, 전신에 의한 통신, 國際市場環境의 變動등에 기인한다.

(1) 國際商慣習과 國際條約에 대한 無知

國際商慣習의 貿易條件基準에 대한 용어의 지식이 불충분, 國際條約에 대한 無知 등으로 말미암아 클레임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世界의 貿易規模의 확대에 따라 다음과 같은 商去來上의 國際的 統一規則이 제정되어 있다.

① 1932년 國際法協會(International Law Association)에 의하여 제정된 'CIF 契約에 관한 Warsaw-Oxford規則'(Warsaw-Oxford Rules for C.I.F. Contract, 1932).

② 1924년 國際海洋法協會(International Maritime Law Association)에

7) 장영준, 「현대무역학원론」, 經世院, 1990, pp. 582-584.

의하여 채택된 「船貨證券에 관한 國際條約」(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of Law Relating to Bills of Lading)[8]

③ 1933년 國際商業會議所(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I.C.C.)에 의하여 제정된 「貨換信用狀에 관한 統一規則 및 慣例」(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Commercial Documentary Credits)[9]

④ 1919년 全美國貿易評議會(National Foreign Trade Council)에 의하여 제정된 「改正 美國貿易定義」(Revised American Foreign Trade Definition, 1941)

⑤ 1936년 國際商業會議所에 의하여 제정된 「貿易條件의 해석에 관한 國際規則」(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10] 등이다.

이상과 같은 국제적 노력에 의하여 國際商慣習의 統一化가 기도되고 있으나 이들 규칙도 그 대부분이 아직까지 拘束力(Binding Force)이 없으며 그 채용은 개개의 매매당사자가 임의로 채용하도록 맡겨져 있다. 또한 이들 규칙은 아직까지 각국의 國內法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드물며, 그 적용범위는 방대한 商慣習의 전체에서 볼 때에 매우 좁은 것이다.[11]

(2) 使用言語의 相異

言語의 相異는 賣渡人과 買受人 사이의 通信去來上의 불편을 가져오고 의

---

8) 이것은 1921년 Hague Rules를 母體로 한 것이라 하여 그대로 Hague Rules로 불리우는 것이 일반적이다.
9) 現行의 規則은 1983년 개정되어 1984년 10월 1일 부터 시행되고 있다.
10) 이 國際規則은 Incoterms라고 약칭하고 있다. Incoterms라는 用語는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의미로 밑줄친 부분을 합친 것이다. 現行의 規則은 1990년 개정된 것이다.
11) 津田昇, 「貿易クレームの 研究 (上)」 東京 : 通商産業調査會, 1964.

사소통을 어렵게하는 원인이므로 크레임의 外部的 原因으로 작용한다.

특히 國際貿易通信文과 契約書 작성자의 모든 언어는 각각 사물을 관찰하거나 경험을 서술하는데 각자의 특정한 방법과 형식을 가지고 있음을 理解하고 있어야 한다.[12]

(3) 전신에 의한 통신

商去來는 서신에 의해서 이루어 지고 있으나 급한 경우에는 전신의 왕복(Exchange of Cable)만으로써 契約이 締結되는 때도 있다. 이때 전신료를 절약하기 위하여 語數를 간략히 하여 確定오파(Firm Offer)시에 중요한 조건의 일부를 기재하지 않음으로서 契約의 締結시나 履行시에 문제가 생겨 클레임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13]

(4) 信用調査의 未備

國內 商去來에 있어서의 相對方에 대한 信用調査는 비교적 쉬우나 멀리 떨어져 있는 외국의 相對方에 대한 信用調査(Credit Investigation)는 항상 변동하는 相對方의 信用狀態 및 金融狀態에 관한 정확하고도 신속한 정보를 入手하기가 곤란하므로 信用調査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악질적인 상대방과 去來를 개시하면 분쟁문제(Trouble and Dispute)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항상 변동하는 상대방의 신용상태(Credit Status) 및 금융상태(Financial Status)에 관한 충분한 조사가 필요하다.

(5) 運送中의 危險

外國貿易은 원거리일 뿐만 아니라 危險이 많은 海上運送(Ocean Transportation)에 의하기 때문에 航海中에 사고가 발생할 기회가 많으므로 運送中

---

12) 張到順, 「國際비지니스 커뮤니케이션論」, 형설출판사, 1984, pp. 59-63.
13) 津田昇, 「前揭書(上)」, 1964年, p. 14.

의 危險은 대부분 海上保險에 의하여 커버(附保)된다.[10]

3. 우리나라 衣類製品의 紛爭發生 原因

우리나라 衣類産業은 지난 20여년간 주요 輸出産業으로서 우리 經濟의 고속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다. 衣類産業은 纖維産業중에서 노동집약도가 높기 때문에 임금상승이나 추격에 의해 수출경쟁력의 약화가 제일 먼저 나타나는 분야이다. KIET에서 지난 1988년 7월에 우리나라 衣類製品의 분쟁 발생원인을 업체별로 설문조사한 결과 아래 그림과 같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圖 2-1〉 우리나라 衣類製品의 클레임 發生原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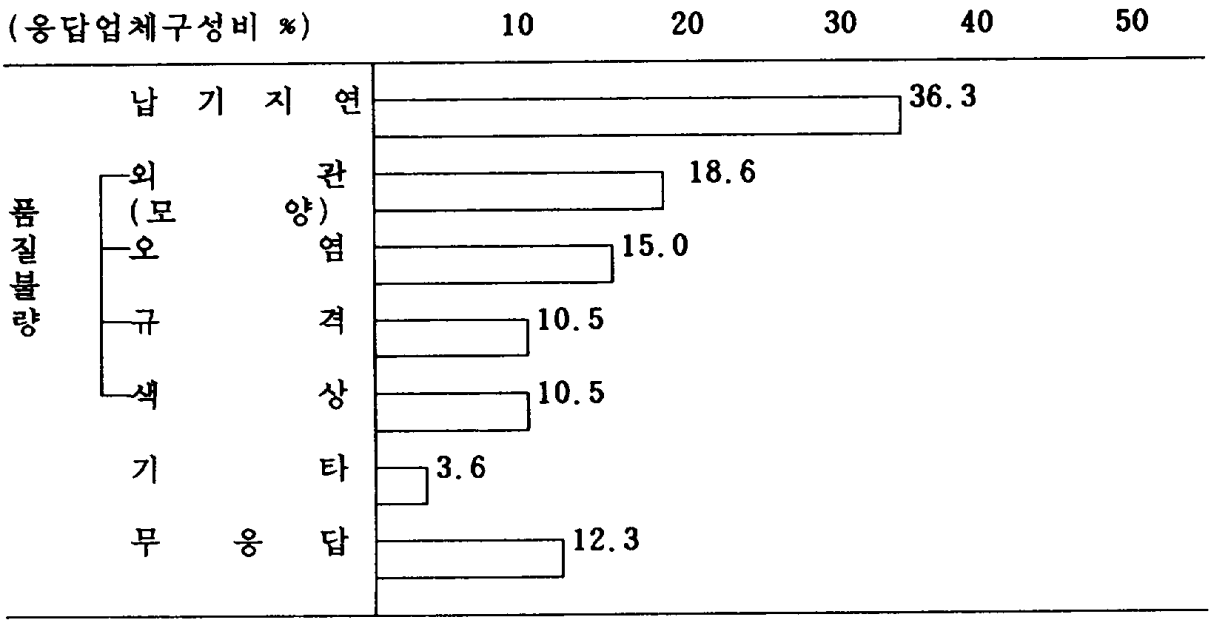

資料 : KIET, 業體說問調査結果, 1988. 7.

우리나라 衣類製品의 紛爭發生原因을 살펴보면, 「品質不良」(외관, 오염,

14) _____ , 「上揭書」, p. 17.

규격, 색상포함)이 총 54.6%로 가장 높아 國際競爭力의 強點이 「品質」에 있다고 業體들이 인식하면서도 品質을 중심으로 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輸出업체들이 輸出商品을 保障, 維持하기 위한 誠實性 내지는 信賴性이 부족한데 基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외의 원인을 살펴보면 「납기지연」 36.3% 기타 3.6%로서 이러한 분쟁은 商品輸出시 조금 더 신중을 기한다면 激減될 수 있으리라 본다. 위의 도표에 나타난 원인 이외에도 數量이나 船積에 관련한 紛爭의 발생원인도 상당하리라 思料된다. <그림 2-1>

第3章 衣類製品 貿易紛爭의 解決方法

第1節 貿易紛爭의 豫防

貿易紛爭의 豫防은 仲裁나 調停보다 낫다는 말이 있듯이 貿易紛爭은 실제로 紛爭이 發生한 뒤에 어떻게 解決할 것인가의 問題보다도 紛爭의 발생을 事前에 豫防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분쟁이 發生하면 加害者는 被害者의 損害를 補償해 주어야 하므로 經濟的 損害는 물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많은 時間을 낭비하게 된다. 따라서 분쟁의 발생을 豫防하기 위한 對應策으로서 주로 貿易去來에 있어 분쟁을 豫防할 수 있는 重要한 事項을 分析하여야 할 것이다. 본 절에서는 品質條件, 數量, 船積에 관한 조건들의 내용을 解決方法에 앞서 言及하고자 한다.

(1) 品質條件

貿易紛爭 가운데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品質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去來當事者間에 品質條件을 約定함에 있어서는 어떤 水準의 品質로 決定할 것인가와 그런 品質水準에 적합한 가의 與否를 檢査하는 基準時點을 어느 때로 정할 것인가를 명백히 해야 한다.

(2) 數量條件

① 數量單位를 明示하여 混動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容積은 40cubic Feet(cft)이지만, 重量론은 Long Ton(Britishton : gross ton ; 2,240 lbs ; 1,016.1kg), short Ton (American ton ; 2,000lbs ; 907.2kg), 그리고 유럽 諸國에서 널리 쓰이는 Metric Ton (French ton ; 2,204.6 lbs ;

1,000kg) 등 세가지가 있기 때문에 當事者間에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안된다.[15]

② 契約商品의 重量을 總量으로 할것인가 純量으로 할 것인가를 約定하여야 한다. 이는 價格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도 총량과 같이 용기나 내장 등 실물 이외의 부속물이 중량에 包含된 경우는 그 만큼 가격을 인하해야하는 이유도 된다.

③ 數量의 정확 여부는 檢量機關이나 檢量人이 검량한 바에 의하여야 하는데 누구의 檢量에 의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어느 檢量機關 또는 檢量人의 檢査로 數量을 입증할 것인가를 사전에 契約으로 約定하여 두어야 한다.

④ 契約上의 數量과 引渡時의 數量에는 過不足이 있게 마련이므로 容認條件(More or less)을 설정해 두어야 한다.[16]

(3) 船積條件

船積條件(Terms of Shipment)은 船積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사항으로 船積時期에 관한 것이다. 契約을 수행하기 위하여 賣渡人은 契約에 정해진 時期에 契約商品을 買受人에게 引渡하여야 하지만 貿易去來는 物品의 輸送을 대부분 海上運送에 의존하므로 物品의 目的地 到着時間을 정확하게 정하기가 곤란하다. 船積條件에서는 보통 船積時期, 船積遲延, 分割船積, 換積에 관한 사항이 다루어 진다.

貿易에서는 配船回數가 적기 때문에 보통 船積時期를 確定日로 정하지 않고 賣渡人이 船積하는 時期를 約定하는 것이 一般的이다.[17]

---

15) 양영환, 「무역학개론」, 동성사, 1987, pp. 289-290.
16) 鄭翼人, 「商事仲裁論」, 무역경영사, 1988, pp. 436-437.
17) 「On or About September 10」과 같이 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9월 10일

船積에 관련된 분쟁은 대부분 지연 때문에 發生하므로 언제를 船積日로 보느냐 하는 것이 重要하다. 船積日이란 貨物全部의 船積이 완료된 날을 말하는 것으로 反證이 없는 한 船荷證券의 日附(B/L Date)를 船積日로 간주되는 것이 商慣習이지만 紛爭의 發生을 防止하기 위하여 賣買契約書에 去來條件의 하나로 明記하는 것이 좋다.

第2節 雙方間의 調整

1. 意義

쌍방간의 調整이라 함은 當事者(Claimant와 Claimee)간의 직접적인 교섭만으로써 분쟁을 解決하는 方法을 말한다. 즉, 제3자를 개재시키지 않고 解決하는 方法이다. 모든 貿易紛爭은 當事者間에서 解決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 왜냐하면, 當事者는 분쟁의 내용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분쟁의 發生環境, 原因 및 狀況 등을 다른 사람보다 쉽게 조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쟁을 當事者間에 解決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① 調停과 仲裁에 있어서는 當事者가 證據書類를 作成하여 調停인(Cociliator)또는 仲裁人(Arbitrator)에게 제출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뒤따른다. 그러나 當事者間의 解決에 있어서는 相互間의 서류교환만 필요하다.

부터 前後 각각 5일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다. (김한수, 「신용장통일규칙」, 육법사, 1991(제1판), pp. 215-216.)

② 當事者間의 解決에 있어서는 상대방과의 장래의 去來關係(business Relations)를 충분히 고려 하기 때문에 비록 兩當事者가 각각 자기의 입장에 서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서로 타협(Compromise)하거나 또는 장래의 去來를 위하여 양보(Concession)를 할 여지가 많다.

③ 調停에는 兩當事者의 合意(agreement)가 필요하며, 또한 仲裁의 경우에도 仲裁機關(arbitration organization), 仲裁人의 선정 및 仲裁規則(arbitration rule)에 관한 合意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當事者間에 이러한 合意가 쉽게 이루어 지지 않기 때문에 분쟁의 解決이 늦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반하여 當事者間의 解決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한 合意가 전혀 필요 없는 것이다.[18]

2. 請求權의 抛棄(waiver of claim)

분쟁에 대한 청구권의 포기는 상대방에게 다른 條件의 혜택을 주거나, 분쟁의 금액이 아주 근소하여 분쟁의 제기가치가 없을 경우이다. 이러한 것은 분쟁의 請求를 포기함으로써 상대방과 계속거래를 하는 것이 앞으로의 이윤추구에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때문이며 이는 주로 무역거래에서 發生하는 것이고 해상운송에서의 무역분쟁은 특수한 해상위험과 많은 금액의 손해가 발생하므로 실제로는 잘 이용되지 않으며, 또한 이 방법을 권장할 바도 못되며 仲裁를 신청한다던가 提訴하더라도 그 액수가 적어 경비가 Claim 액수를 초과될 수 도 있을 것이다.[19]

---

18) 津田昇, 「貿易クレームの研究(上)」, 東京, 通商産業調査會, 1964, pp. 104-106.

19) 林泓根, 「商事仲裁에 관한 硏究」, 한국무역연구소, 1972, p. 8.

3. 和解(Amicable settlement)

본 연구에서는 사법적 해결으로서의 和解와 중재법상의 해결으로서의 和解 두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번째로, 사법적 해결으로서의 화해는 소송중에 있는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주장을 서로 양보하여 소송을 종료시키기로 하는 期日에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해서 口述로 화해의 내용에 관한 진술이 필요하다.

당사자 상호간의 협의와 양보를 거쳐 분쟁을 自主的으로 해결하므로, 終局判決에 의한 一刀兩斷的 승패로 黑白을 가리는 것보다는 장래의 거래지속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고 簡易·신속한 분쟁해결로 당사자는 새로운 거래를 찾는데 활력소가 될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사회적 弱者에게 訴訟外의 차원에서 強者의 요구를 강요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단점도 지니고 있다.

두번째로, 仲裁法上의 해결으로서의 화해는 법원의 소송상의 화해와 같이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그들 사이의 분쟁을 終止할 것을 約定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역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당사자가 중재절차중에 상대방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승인하고, 자신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撤回하여 화해를 하였을 경우에, 당사자의 요구로 仲裁人은 합의된 화해의 內容條項을 判定으로 記載하게 된다(상사중재 규칙 제52조)[20]

이렇게 내린 判定을 화해판정이라 하여, 중재인이 自由心證으로 판단하여 내리는 중재판정과 效力은 같지만, 당사자의 의견이 均衡的으로 반영되어

---

20) 고범준, 「국제상사중재법 解義」, 대한상사중재원, 1985, PP. 13-14.

당사자들에게 만족을 준다는 점에서 다르다. 중재과정중 당사자의 합의로 중재인에 의해 확인 된다는 점 이외에 대해서는 전술한 화해와 같다.

第3節 第3者의 介入

當事者간의 직접적인 解決方法이 가장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써 모든 貿易분쟁을 원만하게 解決할 수는 없다. 즉 ① 쌍방의 主張이 끝까지 對立될때, ② 쌍방 또는 일방의 감정이 惡化되었기 때문에 적절한 제3자의 냉정한 判斷이 필요할때, ③ 상대방이 無誠意하기 때문에 妥協 또는 讓步를 도저히 기대할 수 없을때, ④ 學識과 經驗이 풍부하고 또 貿易實務에 정통한 제3자를 개입시키면 빨리 解決되리라고 생각될때 등에는 제3자에 의한 解決方法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斡旋, 調停, 仲裁 및 訴訟등도 制度적 價値를 충분히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제3자의 解決에서도 仲裁에 의하지 않고는 解決이 어려우며 결국 商事仲裁에 의해 거의 解決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仲裁와 결부하여 논해 보기로 한다.

1. 調停(Conciliation, 사법적 해결방법으로서)

무역분쟁의 사법적 해결방법으로서의 조정은 법원에서 조정위원회가 당사자간에 서로 양보해서 합의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斡旋하는 제도이다. 이는 관련당사자들의 자발적인 합의로 조정신청을 해서, 제시된 조정안이 반드시 당사자들에 의해 自意로 수락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

으로 당사자의 뜻에 관계없이 조정에 붙여지는 경우도 있다. 만약 일방 당사자가 조정인이 제시한 조정안을 끝내 수락하지 않으면 訴訟으로 복귀되고,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재판상의 和解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그 효력은 준재심의 절차에 의하여서만 다룰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 제도는 (1) 법률을 기준으로 하는 一刀兩斷式의 소송과는 달리 당사자간에 怨恨感을 남기지 않고 당사자 서로가 양보한 끝에 條理에 좇아 실정에 맞게 타협하는 自主的인 분쟁해결방법이고 (2) 판결절차보다는 簡易·신속 저렴한 비용을 들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며 (3) 당사자의 합의를 필요로 하는 점에서 소송과 본질을 달리하며, 조정위원회에 의한 분쟁해결절차인 점에서 法官만이 개입하는 재판상의 화해와는 다른 절차이다.

조정위원회는 법관과 비법관으로 구성되는 혼성위원회로서 다툼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해결을 알선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정의 절차에 관하여는 법적규정이 없고 관련당사자의 합의로 성립되기 때문에 관련자의 提訴가 없어야 한다.

2. 訴訟(law suit litigation)

현대 民事訴訟은 민사에 관한 私人간의 爭訟을 국가의 공권력에 의하여 解決하는 制度이다. 이 爭訟은 民法, 商法 등의 實體私法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에 관한 紛爭 또는 이해의 충돌로서 나타나며 또 그 대부분은 私人간의 交涉, 제삼자의 斡旋, 仲裁 등에 의하여 임의적으로 解決될 수가 있다. 그러나 쌍방이 각자 자기의 주장을 고집하거나 또는 契約上의 의무자가 그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紛爭을 임의적으로 解決할 수 없는 사태가 發生한다. 따라서 국가의 입장에서도 私人간의

자력구제행위를 금지하는 반면에 訴訟制度를 두어 강제적 解決을 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20]

위에서 본 바와 같이 訴訟은 국가기관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紛爭을 강제적으로 解決하는 方法이다. 貿易분쟁 가운데에도 當事者의 교섭만으로 解決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미리 契約書에 仲裁에 의하여 解決한다는 뜻의 合意가 되어있는 경우에는 별문제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강제를 가하기 위하여는 최후수단으로서 국가공권력의 발동을 요청하고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력을 행사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國際간의 去來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法域을 달리하는 외국에 있는 것이 보통이므로 우리나라의 재판권은 상대국에 미치지 않는다고 치명적인 장해가 있고, 나아가 강제집행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貿易紛爭에 대하여는 訴訟에 의한 解決方法은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3. 斡旋(intermediation, Recommendation)

斡旋은 일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方法으로서 이를 紛爭解決에 하나의 수단으로 도입한 것이다. 예컨대, 어떤 紛爭에서 객관적인 제3자가 명시적인 수임을 받은 바는 없더라도, 紛爭 양 當事者에게 합리적 解決方案을 권고할 수 있는데 이를 斡旋이라고 한다.

斡旋은 調停과 매우 흡사하나 그 구조면에서 調停보다 더 비형식적 성격을 띠고 있다. 調停은 仲裁절차의 한 부분으로 취급되고 있으나 斡旋은 仲裁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즉 "斡旋은 勸告의 성격이나 仲裁는 사법적이고

21) 「貿易と 法律(貿易實務講座)」, 有斐閣, 1970, p. 517.

機能的이며, 斡旋은 勸告지만 仲裁는 결정하는 것이다.

仲裁과정에서도 斡旋은 비공식적으로 仲裁人들에 의하여 이용되기도 한다. 仲裁人이 결정을 내리기 앞서 斡旋의 方法으로 解決策을 권고하여 兩當事者는 물론 仲裁人 자신에게도 흡족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미국仲裁協會의 보고서에 의하면 仲裁人 가운데 62%가 斡旋은 그들의 역할이 아니라고 응답하고 斡旋에 반대하였다. 이러한 대다수의 仲裁人이 반대한 반면 20%를 상회하는 仲裁人들은 한번 또는 수번 斡旋을 시도한 바 있었다. 그 이유는 斡旋의 성공가능성은 실패의 위험을 능가한다는 것이었다.

대다수의 仲裁人들이 斡旋에 반대하는 이유는 상당히 능숙하지 않으면 當事者들에게 승패에 대한 힌트를 암시할 위험이 있고 때에 따라서는 불신을 초래하여 곤경에 처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러가지 자료를 수집하여 참고하여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대개의 仲裁人이 仲裁審問 개시전이나 진행도중에 兩 當事者에게 判定보다 和解로 解決할 意思가 있는가를 묻는 方式으로 斡旋을 시도하고 있다. 만약 和解意思가 있을 경우에는 일방 當事者씩 和解案을 분리 청취하고 객관적인 和解誘導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斡旋은 仲裁契約에 포함된 위임사항은 아니다. 當事者의 즉석동의를 얻어 진행하는 권고적 수단이다.

그러나 만약 和解가 성립할 경우는 그 효력보장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仲裁人은 분명히 當事者의 동의를 얻어 判定의 형식으로 和解條項을 기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통상적인 斡旋方式, 즉 제3자인 斡旋人의 개입으로 和解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當事者間의 신의의 문제로써 私的契約의 형태를 이루는 것일뿐 仲裁判定과 같은 특별한 효력은 없다.

斡旋이 和解와 다른점은 제3자도 解決을 주선한다는 것이며, 調停과 다른 점은 解決案이 수락된 경우 調停과 같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며 仲裁와 다른점은 비형식적이며 화해결과가 특별한 법적보호를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斡旋機關으로서 國際的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것은 상업회의소(Chamber of Commerce)이다. 상업회의소는 실업인의 근대적인 지역단체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을 비롯한 세계각국의 주요도시에 설치되어 있다. 특히 프랑스의 파리에는 1920년에 설립된 國際商業會議所(ICC)가 있다.

상업회의소는 회원 相互間의 紛爭을 처리하는 것이 그 설립목적의 하나이므로 紛爭을 처리하는 機能을 지니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국가 기관이 아닌 까닭에 일반적으로 강제력은 없다. 뿐만 아니라 회원조직에 의하여 운영되므로 회원 相互間의 斡旋은 어느정도 실효를 거둘수 있으나, 비회원에 대하여는 그렇지 못한 경향이 없지 않다.

4. 仲裁(Arbitration)

중재는 분쟁당사자가 합의로 처분할 수 있는 분쟁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 합의로 선정한 제3자에게 그 판단을 부탁하고, 그들이 내린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구속력을 가진 분쟁당사자의 自治法延制이다.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고 당사자들을 구속한다는 의미에서 정치권이나 언론계에서 흔히 쓰이는 仲裁와는 큰 차이가 있다. 중재제도가 당사자를 구속하는 분쟁해결수단으로서 무역업계의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은, 법원 판결의 효력이 소속국가의 정치권이 미치는 영토나 국민에 원칙상 제한되어 있는데 반해 중재 판정은 국경을 초월해서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중재는 소송으로도 해결이 불가능한 분쟁을 좀더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거래실정에 적절하게 해결하도록 하는 사적자치(私的自治)내지 당사자 自治의 原則에 입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소송에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良心에 따라 爭訟事件을 재판하지만, 仲裁에서 仲裁人은 분쟁에 관련된 각종 내용의 信憑性과 유용성을 관례와 상식에 의해 自由心證으로 판단한다. 그것은

(1) 중재인이 반드시 법률전문가가 아니고 私人이라는 점[22]

(2) 역사적으로 볼 때 중재는 소송으로부터 逃避형태로 발전되어 왔다는 점

(3) 중재는 원래 엄격한 법률의 적용에 의하지 않고, 거래실정에 맞는 융통성있는 해결(flexible resolution)을 구해왔다는 점[23]에 起因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중재인이 내린 중재판정은 유효한 중재계약에 의해, 적법한 중재절차에 따라 당사자를 구속하는 효력을 가진다.

第4節 仲裁制度의 活用

紛爭解決의 수단으로서 仲裁가 활용된 것을 구라파에서 상당한 역사를 지니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극히 최근의 일이다. 정확히 말하면 1973년에 이르러 仲裁法의 개정, 商事仲裁法則의 제정과 동시에 大韓商事仲裁協會가

---

22) 최기원, 「한국기업의 해외진출에 따르는 국제간 분쟁해결을 위한 국제상사중재연구」, 「법학」 제19권 1호 (1978), 서울대법학연구소, p. 200.

23) Alanl. widiss, Arbitration on commerical disputes, Insunance, and Tort Claims, practising Law Institute, 1979, p. 14.

성립됨으로서 비로소 仲裁制度의 체계가 이루어져 갖추어진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仲裁制度는 아직 10대의 성장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 활용범위도 상인들 특히 國際貿易에 종사하는 일부 상인들간에 주로 활용되고 있는 정도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仲裁의 활용범위가 국한되어 있어서 仲裁制度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의 범위도 자연히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仲裁制度가 발달하여 紛爭解決手段의 선택의 범위를 넓혀 준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오늘날 비사법적 紛爭 解決制度와 仲裁制度를 선호하는 경향은 사소한 일상의 去來분야, 근로관계분야, 國際去來를 포함하는 商去來분야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특히 國際去來에 관련된 紛爭解決문제는 이를 解決할 효과적이고도 강력한 집행력있는 國際法 機構가 없기 때문에 비사법적 紛爭解決節次의 중요성은 더 없이 큰것이다.

1. 商事仲裁의 槪念

仲裁라 함 當事者間의 仲裁合意(arbitration agreement)에 의하여 사법상의 權利 기타 법률관계에 관한 紛爭을 法院의 訴訟節次에 의하지 않고 私人인 第3者를 仲裁人으로 선정하여 그 紛爭의 解決을 仲裁人의 判定에 맡기는 동시에 최종적으로 그 判定에 복종함으로써 紛爭을 解決하는 制度를 말한다.[20]

---

24) 한국 중재법 제1조
森井清, 「國際商事仲裁」, 東洋經濟新報社, 1970, p. 12.
Martin Domke, Commerical Arbitration, Garriel M·Wilner, Callaghan company, 1968, p. 12.
Robert Coulson, Business Arbitration,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1980, p. 6.

즉 仲裁人에 의한 解決은 사법기관의 절차를 거치면 막대한 시간과 경비를 필요로 할 뿐더러 쟁점解決과정에서 當事者간에 감정상의 대립을 악화시키기 때문에[24] 仲裁가 國際紛爭을 解決하기 위한 최선의 方法이며 실제로 공평하고 널리 인정되어 세계 모든 곳에서 執行力이 있는 唯一하고 容易하게 이용되는 解決方法으로 대두되었다.[25]

通商裁判과 仲裁의 차이는 통상재판이 법에 의한 判斷이라면 仲裁에 "인격에 의한 판단"이라 할 수 있으며, "좋은 仲裁란 좋은 仲裁人이다".(The good arbitration is the good arbitrator)라든지 또는 "仲裁는 仲裁人이나 마찬가지다.(The arbitration is as good as the arbitrator)란 말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27]

仲裁合意는 紛爭에 대한 法院의 裁判權을 배제하고 仲裁人이란 민간인에 의한 자율적 紛爭解決方法으로써 이는 仲裁人이 선임되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현재나 미래의 紛爭을 仲裁에 회부하는 意思를 말하며[28] 仲裁合意에

金鍾秀, 「우리나라 商事仲裁制度와 그 運營改善方案에 관한 考察」, 成大貿易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3, p. 4.
최희재, 「韓國의 商事仲裁制度에 관한 硏究」, 釜山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3, p. 14.
朴根哲, 「貿易클레임의 現況 및 解決制度에 관한 硏究」, 高麗大學校 經營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1. p. 19.
蔡點吉, 「貿易클레임 解決에 관한 制度的 硏究」, 延世大學校 經營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2. p. 72.
鄭冀人, 「商事仲裁論」, 貿易經營社, 1992, pp. 37-38.

25) 朴東圭, 「海外進出에 따른 外換關係紛爭과 仲裁」 仲裁 73號, 대한상사중재원, 1978, p. 2.

26) JCA Journal 79. March, p. 14.

27) M.Rangel Brazil, National System of Arbitration, Year book Commercial Arbitration volume Ⅲ. 1978. p. 31.
林成浩, 「國際商事仲裁에 관한 硏究」, 韓國外國語大學校 貿易大學院 碩士學位 論文, 1983, pp. 4-5.

28) Charlesworth's Merchantile Law, 11th editin, Clive M,

는 이용할 仲裁機關, 적용할 準據法, 仲裁場所등 3가지 사항이 기본적 조건이 된다. 仲裁合意를 하고서도 一方當事者가 法院에 제소하는 경우에는 相對方當事者는 방소인 항변[29]을 하면 되고, 그 결과 소각하가 된다.[30] 한편 仲裁의 대상은 當事者가 自由意思로서 처분할 수 없는 비공사건, 가사심판사건, 집행사건등은 제외된다. 그러므로 國內商去來는 물론 國際貿易去來에서 發生하는 모든 紛爭은 仲裁로써 解決될 수 있다.[31]

이밖에 商事仲裁에 관련한 주요한 개념은 仲裁는 원래 엄격한 법률의 적용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체적 실정에 맞는 융통성 있는 解決을 한다는 점에 있다.[32] 仲裁의 역사가 긴 외국의 경우에는 實業家나 法律家들 대다수가 仲裁節次는 訴訟節次에 비하여 상당히 經濟的이라고 믿고 있다.[33]

2. 仲裁制度의 長點과 短點

(1) 仲裁制度의 長點

① 平和的雰圍氣(Peaceful atmosphere)

仲裁는 相互交涉과 호양의 수단에 의하여 평화로운 분위기속에서 진행된다. 그러나 訴訟은 提訴와 召喚의 수단에 의하여 위압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된다.

Schmitthoff LL, D, & David A.G.Sarre, M.A.Stevens &, 1967, London.

29) 金曾漢, 「法律學 大辭典」, 法文社, 1982, p. 598.

30) 張大永, 「仲裁」, 第30號, pp. 2-3.

31) 崔章鎬, 「貿易클레임 處理와 商事仲裁의 問題點 高大經營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76, p. 40.

32) 婁二秀, 「貿易클레임과 商事仲裁」, 仲裁 34號, p. 3.
Clive M, Schmitthoff, The Export Trade, Stevens & Sons Ltd. London 1969, p. 345.

33) 鄭冀人, 「韓國商事仲裁制度의 效率的 運營을 위한 硏究」, 成大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83, p. 27.

② 自由合意에 의한 紛爭解決 부탁(Voluntary reference)

즉, 仲裁는 紛爭의 當事者가 그들의 自由意思에 의하여 合意한 결과(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그들 자신이 선임하는 私人인 仲裁人에게 紛爭을 解決할 것을 부탁함으로써, 兩當事者가 그러한 判定의 결과에 복종하기로 하는 制度인 것이다.

③ 「外國判定의 承認 및 執行」의 保障

이것은 New York 仲裁協約에 가입함으로써 체약국간의 호전원칙에 따라 가입국은 타국의 仲裁判定을 승인하고, 그 집행을 보장한다는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國際商事仲裁制度를 위하여서는 한가지 강점인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73년에 동협약에 가입하였으며 이 협약에 가입한 국가수는 모두 70개국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④ 具體的 妥當性

현대 회사가 자본주의의 발달로 산업화, 전문화, 복잡화 함에 따라 법관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경험만으로는 去來上 紛爭의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어렵고, 실정에 맞는 판결을 하기가 어려우나, 仲裁는 각종 去來關係에서 發生한 紛爭은 그 분야의 지식과 경험있는 전문가에 의해서 판단, 解決토록 함으로써, 실정에 구체적으로 타당한 합리적 解決을 할 수 있다.

⑤ 費用의 低廉性

仲裁는 紛爭을 신속히 解決하고, 단심제이므로 訴訟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 仲裁의 경우는 訴訟의 경우에 많은 비용을 요하는 변호사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紛爭當事者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된다.

⑥ 秘密保障性

法院에 判決節次로 원칙적으로 公開時에 遂行되어 있고, 安全保障이나 社

會秩序 등 예외적인 경우에 결정으로 非公開審理를 하고, 判例는 公開되므로 개인이나 회사의 비밀이 공개되나, 仲裁는 엄격한 非公開主義에 따라 사인의 비밀이 절대적으로 보장되므로 대외신용의 침해를 받을 우려가 없다.

⑦ 友誼性

訴訟을 提起하여 법정투쟁을 벌이면, 當事者는 원고, 피고로서 수단을 다해 다투기 때문에 감정관계가 좋지 않고 訴訟이 끝난 뒤에도 去來活動 지속에 악영향을 주지만 仲裁의 경우엔 仲裁人이 쌍방의 의견과 양보여부 및 구체적 실정을 調停하여 判定을 내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쌍방의 타협안이 될 가능성이 많은 실정이어서 當事者간의 대립을 피할 수 있고, 판정후에도 계속적인 去來關係를 원활히 유지할 수 있게 된다.

⑧ 迅速性(Speediness)

仲裁判定은 仲裁契約에서 약정된 기간내에 또는 仲裁法規에 의하여 정해진 특정기간내에 종결되며 그러한 기간은 통상 3개월(최단 1개월, 최장 1년 이내 단, 우리나라 仲裁法 제 11조 제5항에서는 仲裁가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의 비교적 단기간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규정됨으로써 紛爭解決의 신속성이 강조된다.

⑨ 仲裁人의 專門性(expertness of arbitrators)

仲裁人은 紛爭의 내용과 성질을 용이 신속하게 감식할 수 있는 사계의 전문가, 학자 또는 법조계인사들 중에서 선임될 수 있다. 그러나 訴訟에서는 재판관에게 그러한 전문성이 기대될 수 없으므로 참고인, 감정인 등의 전문가의 출두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⑩ 審問節次의 非公開(Closed proceeding)

仲裁에 있어서의 심문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므로 특히 國際

貿易紛爭의 경우에 있어서 去來의 대외적으로 누설되는 폐단을 방지할 수 있고 그로써 대외신용의 계속유지가 보장된다. (判定文도 공개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訴訟에 있어서는 재판절차나 판결문이 각각 공개되는 것이므로 기밀의 누설 대외신용의 손상의 방지를 위한 보장이 기대될 수 없다.

(2) 仲裁制度의 短點

商事仲裁制度의 단점에 대하여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그 논의의 촛점을 대체로 다음의 두가지로 요약하여 고찰할 수 있을 것 같다. 즉,

① "matter of law(or, question of low)", (法律問題)

이것은 仲裁人은 事實問題에 대하여는 그 전문가로서의 지식을 충분히 발휘하여 紛爭내용을 신속, 공정하게 判定할 수 있을지 모르나 중요한 법률문제가 개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仲裁人은 판단능력이 약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仲裁人은 그의 전문분야가 아닌 법률문제를 判定한다는 것은 그 判定의 결과에 대한 「不完全性」의 문제를 배제할 수 없는 것이며 그러한 위험성은 특히 詐欺 또는 出訴期限(Fraud or limitations)과 같이 고도로 전문적인 법적논쟁이 개재될 수 있는 紛爭사건의 경우에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견해인 것이다.

② "Problems of Predictability"(判定결과에 대한 「豫見可能性」 有無의 問題)

仲裁人은 原則的으로 法律에 拘碍되지 아니하고 商慣習에 의하여 또는 過去의 經驗이나, 條理에 의하여 左右될 危險性이 不無함으로써 그 最終的인 判定의 公正性이 充分히 擔保되어 있지 못한 것이라는 立場에서 내려지는 見解인 것이며 따라서 仲裁判定의 結果에 대해서는 그 豫見可能性이 缺如되어 있는것이라는 觀點에서 指摘되는 問題인 것이다.[30]

3. 商事仲裁의 機能

(1) 國內的 機能

韓國에 商事仲裁制度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社團法人 大韓商事仲裁協會에 의하여 노출된 클레임을 모두 흡수, 處理하게 됨으로써, 과거에 클레임을 발생시키고 그 責任을 외면하던 일부 貿易商들은 보다 신중하게 輸出商品管理를 하게 되었다. 이는 健全한 貿易風土造成에 한 계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政府로서도 仲裁協會(仲裁院)를 적극 支援할 名分이 있었다.

商事仲裁에 관여하는 仲裁人이 數가 차츰 많아지게 됨에 따라 相當數의 人士들이 仲裁에 대한 認識을 새로이 하게 되었고, 특히 法曹界 人士들의 관심이 커지기 시작한 것은 韓國貿易과 관련하여 多幸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대개의 法曹人들의 관심은 貿易에서 發生하는 클레임보다 國內의 民·商事紛爭에 더욱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法曹人들의 商事仲裁에의 관심과 貿易에 관련된 慣習내지 實務的 慣例에 대한 새로운 硏究는 貿易商事들에게 클레임 要素를 事前에 豫防할 수 있도록 助言하는데 有利하였다.

貿易商社들은 商品의 海外販賣에만 주력하였기 때문에 契約, 船積, 運送, 保險, 代金支給, 瑕疵擔保 등과 관련되는 복잡한 法務的 管理에 소홀한 점이 있었으나, 商事仲裁制度確立을 통한 엄격한 責任이 지워짐으로써 보다 신중하게 貿易管理를 하게 되었다. 그러한 結果 상당수의 貿易商社들은 社內에 法制室을 新設하거나 또는 專擔職員을 養成하는 등으로 對策을 수립하게 되었고, 商事仲裁의 便利한 點을 硏究하여 有益하게 活用하기 위한 본격적 작업을 하기도 하였다.

---

34) 森井清, 「國際商事仲裁硏究」, 1970, p. 245.

이와같이 國內的으로 商事仲裁는 紛爭의 迅速處理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紛爭의 當事者에게 積極 對處하도록 유도하였고, 또한 스스로 그 豫防을 위한 體制의 整備와 誠實한 業務處理를 하게끔 인도하였다. 이는 오늘날 國際社會에서 論議되는 新國際經濟秩序에 부응하는 자연스러운 國內的 經濟秩序確立의 動機도 되었다.[35]

(2) 國際的 機能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仲裁制度가 보급된지 얼마 안되는 까닭에 이용에 대한 일반업계나 법조계의 반응을 얻기가 힘든 형편이나 仲裁의 역사가 긴 외국의 경우에는 실업가나 법률가들 대다수가 仲裁節次는 訴訟節次에 비하여 상당히 經濟的이라고 믿고 있다. 이는 仲裁가 迅速經濟의 원리에 따라 신속하게 解決할 수 있고,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인 것이다.

사실 仲裁는 國內的인 紛爭解決手段으로 보다 國際的인 紛爭解決手段으로 더욱 편리하고 실익이 있다고 인정되어 왔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 商事仲裁制度는 국가 貿易政策이 국가 경제발전의 주축이 됨에 따라 필요에 의해 育成되므로 國際商事 機能이 그 주목적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貿易去來에 發生되는 분쟁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한국내에서도 商事仲裁로 解決하도록 정부가 政策支援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商事 仲裁制度는 國際經濟的 機能에 치우치고 있다고 보겠다.

(3) 國際的 效力性

재판은 그 효력의 근거가 국가통치권의 발동이므로, 국경을 넘어서 효력이 미치는 데에도 주권문제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문제점을 일으키지만 仲裁

35) 鄭翼人,「한국 상사중재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2, p. 30.

판결은 그 효력의 근거가 私人의 자주적 合意에 둠으로써 主權免除(Sovereign immunity)와 관계없이 國際的으로 효력이 미치게 하는데 편리하며, 當事者인 국외거주 외국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仲裁判定의 國際的 效力 즉, 外國仲裁判定의 承認 및 執行에 대하여는 현실적인 여러가지 사정 때문에 그 집행의 보장은 사실상 어려운 형편이나,[36] 20세기 들어서면서 확대되는 貿易去來量에 수반되는 國際商事 紛爭의 효율적 解決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각국간에 外國仲裁判定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응하여 우리나라도 1973년 UN協約(The United-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에 가입을 하였다.

앞부분에서 仲裁는 통상재판에 비해 具體的 妥當性, 迅速性, 低廉性, 秘密保障性, 우의성 등과 함께 國際性에 특성이 있음을 보아 왔다.

여기서 우리는 仲裁의 존재이유를 항상 변화하는 去來의 실제에 맞는 紛爭解決에서 찾을 수 있겠다.

第5節 貿易紛爭의 轉嫁

貿易業者의 立場에서는 「분쟁」의 轉嫁는 自己防衛上 必要한 것이므로 극히 重要하다.

첫째, 貿易業者가 「분쟁」을 다른 사람에게 轉嫁시킬려고 하더라도 그 「클레임」의 內容, 形態, 狀況 및 原因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轉嫁할 수 있는

---

36) Martin Domke, The Law and practice of commerical Arbitration Callaghan & Co., p. 1.

경우와 容易하게 轉嫁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또한 아무리 轉嫁시킬려고 하더라도 절대로 轉嫁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대체로 「클레임」을 轉嫁할 수 있는 경우는 Claimee가 그 「클레임」의 內容, 形態, 原因 등을 충분히 調査한 結果 다른 사람에게 그 「클레임」을 追窮할 수 있는 때, 즉 다른 사람에게 責任을 돌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해 「클레임」에 관하여 자기에게 過失이나 誤解가 없는 때이다. 예컨대, 貨物損傷에 관한 「클레임」이 提起된 경우에 賣渡人은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1) 그 破損이 船海中의 海難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면 付保條件에 따라 買受人으로 하여금 保險會社에 求償하도록 한다.

(2) 包裝不良에 의한 것인 때에는 包裝業者에게 「클레임」을 轉嫁하여야 한다.

(3) Maker의 責任으로 歸屬되는 때에는 Maker에게 求償한다.

(4) 運送會社 또는 船積會社의 부주의에 原因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에게 求償함으로써 「클레임」의 轉嫁를 피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에 반하여, 轉嫁가 困難하거나 또는 不可能한 경우라 함은 여러가지 要因을 調査한 結果 다른 사람에게 責任을 돌릴 수 없는 때 및 자기에게 過失이나 誤解가 있은 때 등을 말한다.[37]

둘째, 「클레임」의 轉嫁 可能性에 있어서

(1) 輸入業者의 경우는 輸入業者가 國內의 去來先인 Consumer 또는 國內의 買受人으로 부터 제기당한 「클레임」에 대하여는 ① 相對國의 販賣者, ② 保險會社, ③ 船舶會社 등에 「클레임」을 轉嫁시킬 수 있는 合理性과 可能性을 충분히 探究할 必要가 있다. 또한 외국의 판매자로부터 「클레임」이 提起

37) 姜二秀, 全訂 「무역클레임론」, 삼영사, 1992, pp. 28-30.

된 때에는 商談契約의 締結 및 契約의 履行狀況 등을 상세히 調査함으로써 自國의 Consumer 또는 買受人 其他 사람에게 「클레임」을 轉嫁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可能性 및 正當性을 探究하여야 한다.

(2) 輸出業者의 경우는 輸出業者도 外國의 購買者로부터 「클레임」을 提起당한 때에는 ① 買入先인 自國의 Maker 또는 賣渡人, ② 船舶會社, 倉庫會社, 船積代理人, ③ 包裝會社등에 대하여 「클레임」을 轉嫁시킬 수 있는 合理性 및 可能性을 探究하여야 한다. 한편, 國內의 買入先인 Maker 또는 賣渡人으로부터 提起된 「클레임」에 대하여는 商談, 契約의 締結, 契約의 履行狀況 등을 충분히 調査함으로써 그 「클레임」을 外國의 購買者 또는 其他 사람에게 轉嫁시킬 수 있는가의 與否를 探究할 必要가 있다.

第 4 章 衣類製品 貿易紛爭 解決事例

第 1 節 衣類製品의 貿易 現況

1. 의류제품의 유통특징

우리나라 衣類製品의 輸出方式을 보면 먼저 自己固有商標에 의한 輸出이 全體의 12.7%에 不過하며, 87.3%는 OEM(주문자 상표부착) 방식의 輸出로 이루어 지고 있다. <表 4-1>

品目別로는 드레스와 스웨터 類의 自體固有商標輸出比重이 높고 니트셔츠, JACKET類가 相對的으로 낮다.

<表 4-1> 衣類産業의 品目別 輸出方式의 比較 (單位 : %)

品目 / 方式	全 體	品 目 別 區 分				
		니트셔츠	스웨터	드레스	직물셔츠	자켓
自體固有商標	12.7	6	16.3	21.0	10.8	9.3
O E M	87.3	94	87.3	79.	89.2	90.7

資料 : KIET 業體說問調査結果, 1988, 7

한편, 우리나라 衣類製品의 輸出經路는 相談 및 準備過程에서 原·副資材 供給, 生産過程에서의 自體生産과 下請生産, 輸出節次, 船積準備 및 製品輸送 등 5가지로서 이들 輸出段階를 얼마나 신속히 수행하는가에 따라서 輸出 델리버리를 크게 短縮하여 바이어로부터 納期信用을 增大시킬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衣類輸出은 <그림 4-1> 에서와 같이 각 段階別로 매우 복잡한 輸出許可節次와 船積準備節次가 있어, 이를 간소화 시키는 것이 輸出所要日字를 크게 短縮시킬 수 있는 課題이다.

〈圖 4-1〉 우리나라 衣類輸出의 流通構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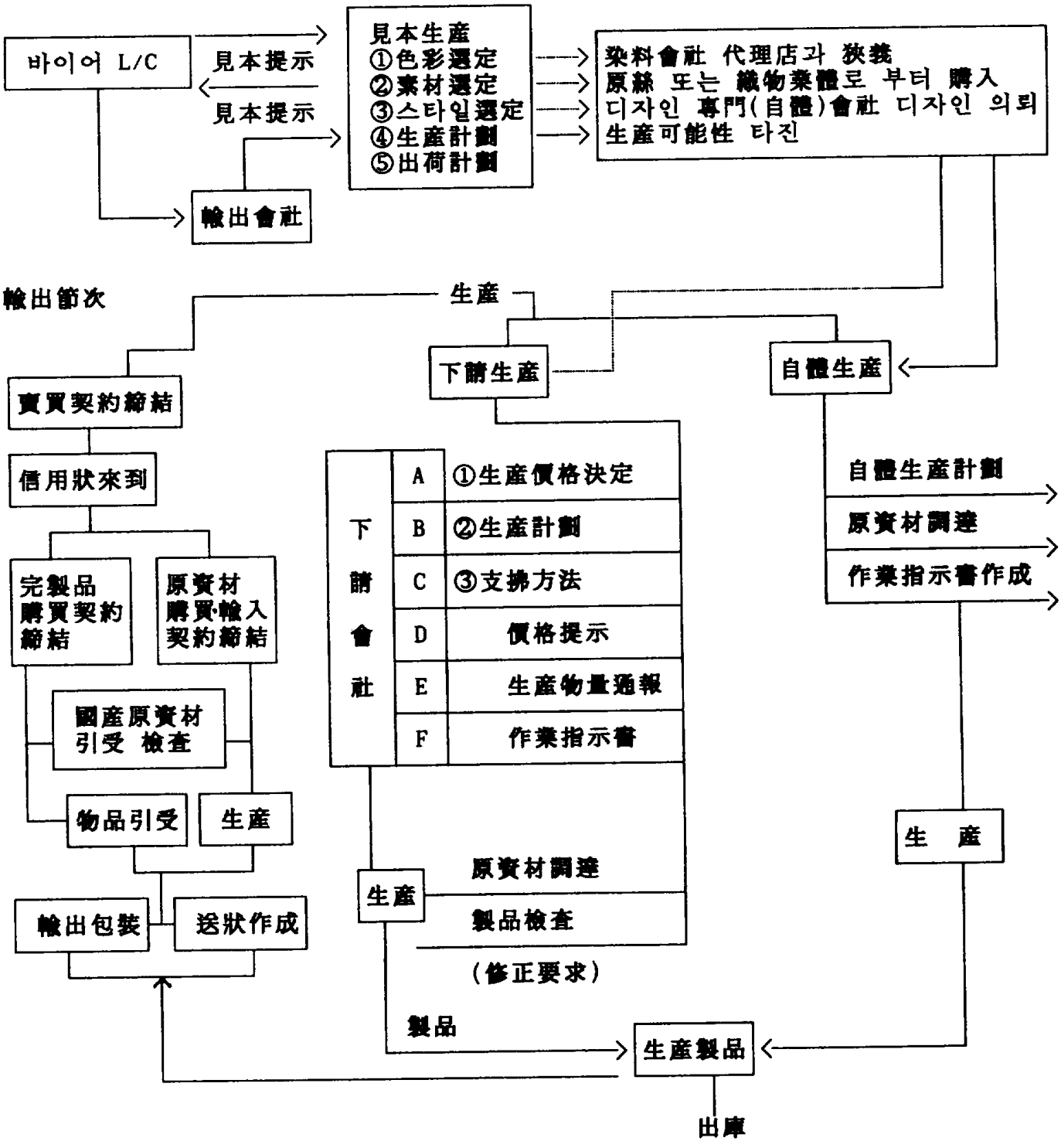

資料 : KIET 業體說問調査結果, 1988. 7

2. 品目別 衣類製品輸出 推移

(1) 織物製 衣類

1988년까지 거의 매년 두자리대의 높은 신장세를 지속했던 織物製 衣類 輸出은 1989년 들어서 小幅의 감소세로 반전된후 1990년 중에도 14.3% 감소한 3,149 백만달러를 기록하였는데 그쳐 높은 부진상을 보였다.

〈表 4-2〉 年度別 衣類製品輸出推移

(단위 : 천달러, (%))

區分 \ 年度	1988	1989	1990	전년비增加率
織物製 衣類	3,746,651	3,672,265	3,148,786	- 14.6
編織製 衣類	3,060,967	3,082,259	2,584,117	- 162
革 衣 類 (革製衣類, 毛皮衣類 包含)	1,640,893	2,008,133	1,866,945	- 7.0

資料 : 韓國貿易協會, 輸出統計, 1991.

(2) 編織物衣類

1990년중 編織物 衣類 輸出은 주종인 쉐타 輸出이 크게 부진하여 전년비 16.2% 감소한 2,584 백만달러에 그쳤다. 이는 價格 競爭力外에 이상난동의 지속에 따른 需要不進과 1990년 8월 쉐타 輸出에 대한 반덤핑 판정으로 업계의 輸出 마인드가 크게 위축된데 주로 기인하였다.

(3) 革衣類

1990년중 革衣類 輸出은 전년비 7.0% 감소한 1.867 백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品目別로는 革製衣類가 對獨逸 輸出은 호조를 보였으나 주시장인 對美, 對日 輸出이 이상난동의 영향 및 ANTI-FUR 운동의 확산으로 인해 需要가 크게 감퇴되어 전년비 23.7% 대폭 감소한 133백만 달러에 그쳤다.

〈表 4-3〉 衣類産業의 品目別 輸出推移

(단위 : 천달러, %)

區分 \ 年度	1988	1989	1990	전년비 증가율
織物製衣類	3,746,651	3,672,265	3,148,786	- 14.3
·코트,쟈켓	569,682	779,909	780,845	- 0.1
·신 사 복	162,096	201,301	142,386	- 29.3
·드 레 스	200,764	151,536	149,844	- 1.1
·남성셔츠	669,690	712,520	559,209	- 21.5
編物製衣類	3,060,967	3,082,259	2,584,117	- 16.2
·쉐 타	1,249,415	1,290,212	980,102	- 24.0
·스 커 트	81,562	97,224	97,823	0.6
·양 복	56,339	43,160	32,252	- 25.3
·언더셔츠	105,000	152,152	187,043	22.9

資料 : 韓國貿易協會, 輸出統計, 1991.

織物製衣類와 編物製衣類의 輸出推移를 〈표 4-3〉에서 살펴보면 가장 높은 수출고와 수출증가율을 나타낸 品目은 신사복류이다. 신사복은 1990년 14억 2천만 달러를 輸出함으로써 編織製衣類의 주 輸出品目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코트와 자켓만이 編物類에서는 언더셔츠가 22.9%를 增加하여 호조를 나타냈을뿐 나머지 品目은 減少勢를 나타내고 있다.

3. 品目別 紛爭發生現況

〈表 4-4〉 品目別 紛爭發生現況 (단위 : %)

品目別 \ 年度·區分	1982		1983		1984		1985		1986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1次商品 (農·水·林·鑛)	6.7	4.4	6.4	10.0	6.6	4.6	6.3	23.1	8.5	19.7
重化學製品 (機·電·化)	25.9	22.7	23.3	50.3	22.5	40.5	22.5	21.6	19.3	18.9
繊物·衣類	23.4	4.2	26.6	13.6	26.9	15.8	26.1	7.0	28.2	13.9
雜 貨	19.7	13.0	22.3	11.8	27.8	21.5	26.4	6.0	26.0	7.9
其 他	24.3	55.7	21.4	14.3	16.2	17.6	18.7	42.3	18.0	39.6
計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品目別 \ 年度·區分	1987		1988		1990		1991		1992(1-4월)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1次商品 (農·水·林·鑛)	7.9	15.4	5.4	9.2	4.2	26.3	6.9	8.6	8.5	11.5
重化學製品 (機·電·化)	18.3	13.1	22.5	16.3	27.3	36.5	24.0	44.2	32.8	24.1
繊物·衣類	25.3	8.7	23.4	13.3	21.9	12.7	22.4	11.7	31.2	8.9
雜 貨	32.7	19.2	30.9	9.1	30.6	7.7	28.0	19.0	7.4	1.9
其 他	15.8	43.6	17.8	7.1	16.0	16.8	18.7	16.5	20.1	53.6
計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대한상사중재원

우리나라 品目別 紛爭現況 가운데 1982년부터 1988년까지의 1980년대와

최근 1990년 부터 1992년 4월 까지의 직물·의류 紛爭現況을 살펴보면 件數에서는 重化學製品 다음으로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1990년 부터 1992년 4월까지 와서는 件數는 계속 증가하고 금액면에서는 감소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表 4-4)

第 2 節 衣類製品 貿易紛爭 解決事例

1. 品質不良 紛爭 解決事例

(1) 品質不良의 法的 解釋

韓國商法 第69條「商人間의 賣買에 있어서 買受人이 目的物을 受領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檢査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數量不足을 發見한 경우에는 即時 賣渡人에게 그 通知를 發送하지 아니하면 이로인한 契約解除, 代金減額 또는 損害賠償을 請求하지 못한다.[38]

賣買의 目的物에 即時 發見할 수 없는 瑕疵가 있는 경우에 買受人이 6월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라는 瑕疵에 대한 言及이 있고 또한 民法 제570조 내지 제 581조에는 타나나 있지만 商別이나 民法은 「瑕疵」(흠, 결점, defects)의 직접적인 法律的 性質에 관하여서는 이를 定義하고 있지 아니하며 다만 判例나 學說에서 다음과 같이 解釋되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을 뿐이다. 즉, 이에 의하면 瑕疵는 「賣買契約의 效力이 發生하기 이전부터 目的物에 存在하는 原始的인 것에 한하며, 그 目的物이 원래 保有하여야 하는 것임을 누구나 去來에서 기대하고 있는 程度의 品質, 속성 등을 缺하는 것」

---

38) 고영수, 「판례소법전」, 한국판례연구원, 1984, p. 113.

을 말한다.[39]

그리고, 이들 判例나 學說에 의하면 賣渡人이 目的物에 일정한 品質, 性能 등이 具備되어 있다는 것을 見本이나 廣告에서 明示的으로 保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買受人이 引渡品을 검사한 결과 실지로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도 당연히 이를 瑕疵로 解釋할 수 있다는 것이며, 또 賣買契約의 效力이 발생한 이후 目的物에 대하여 發生한 瑕疵에 대해서는 그것이 賣渡人의 귀책 사유에 의한 것이냐 아니냐의 여하에 따라 債務不履行 또는 危險負擔의 문제로서 處理되어야 한다는 것이다.[40]

한편 이 判例, 學說에서 「… 그 目的物이 원래 保有하여야 하는 것임을 누구나 去來에서 기대하고 있는 정도의 品質, 屬性, 性能, 形態 …」의 解釋에 대한 우리나라와 일본의 民法은 「① 債權의 目的을 種類로만 지정한 경우에 法律行爲의 性質이나 當事者의 意思에 의하여 많은 品質을 定할 수 없을 때에는 債務者는 中等品質의 物件으로 履行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경우에 債務者가 履行에 필요한 行爲를 完了하거나 債權者의 同意를 얻어 履行할 物件을 指定한 때에는 그때로 부터 그 物件을 債權의 目的物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民法 제 375조)[41]

이에 대하여 美國統一商法典 제2-314조 제2항 b호는 「代替性을 가진 物品(substituded goods)의 경우에는, 그 物品은 種類表示의 범위내에서 공평한 平均品質(fair average quality)을 가진 것임을 요한다」고 規定하고 있으며,[42] 英國物品賣買法(The Sale of goods act 1893)에서는 제114조의 「品質

39) 金曾漢 編集, 「(學說判例) 註釋民法」 下券, 韓國司法行政學會, 1972. p. 325.
40) 金曾漢, 前揭書, p. 325.
41) 오세경, 「小法典」, 法典出版社, 1992, p. 841.

또는 適性에 관한 默示的 條件」에서 특히 商品性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42] 「이 法, 기타 制定法에 다른 規定이 없는 한, 다음의 각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賣買契約에 의하여 提供된 物品이 특수한 目的에 적합한 品質 또는 適性을 가져야 한다는 默示的 擔保責任 또는 條件은 存在하지 아니한다.

① 買受人이 賣渡人에 대하여 그 物品을 必要로 하는 특수한 目的을 明示的이나 默示的으로 알려서 買受人이 賣渡人의 숙련 또는 판단에 의뢰할 것을 表示하고 그 物品이 賣渡人의 영업으로써 提供하여야 할 說明書에 該當할 때에는 (買受人의 製造業者 여부는 不問한다), 그 物品이 이러한 목적에 相當하게 적합하여야 할 默示的 條件이 있는 것으로 한다.

다만 特許 기타 상호가 붙어있는 特定品의 賣買契約의 경우에는 特殊한 目的에 의한 適性에 관하여는 默示的 條件은 存在하지 아니한다.

② 그러한 種類의 物品을 取扱하고 있는 賣渡人(製造業者의 여부는 불문한다)으로부터 說明書에 의하여 物品을 買入하는 경우에는 그 物品은 商品性을 가진다는 默示的 條件이 있는 것으로 한다.

다만 買受人이 物品을 檢査한 경우에는, 그 檢査에 의하여 당연히 발견될 수 있었던 瑕疵에 관하여는 默示的 條件은 存在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③ 특수한 目的을 위한 品質 또는 適性에 관하여는 去來의 慣行에 의하여 默示的 擔保責任 또는 條件을 附加할 수 있다.

④ 明示的 擔保責任 또는 條件은 相互矛盾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法의

---

42) 高範俊, 「賣渡人의 瑕疵擔保責任에 관한 硏究」, 大韓商事仲裁協會, 1972, p. 16.

43) Clive M, Schmitthoff, The Sale of Goods, London : Stevens & Sons Limited, 1966.

規定에 의한 擔保責任 또는 條件을 否認하는 것이 아니다.

(2) 事例

〈事例 1〉 仲裁判定 - 品質不良으로 인한 紛爭事例[44]

① 去來 및 紛爭 提起經緯

㉠ 申請人 : 韓國의 J會社

㉡ 被申請人 : 韓國의 S會社

㉢ 紛爭品目 : 코팅원단

㉣ 紛爭原因 : 코팅불량

㉤ 請求金額 : US $ 40,000

申請人의 소개로 국내의 3개 縫製輸出業體(甲會社, 乙會社, 丙會社)는 縫製品을 독일의 G회사에 輸出하기로 하는 契約을 締結하였다. 契約數量과 金額은 각각 다음과 같다.

1) 甲회사 - 여아용 자켓 2,000벌 (금액 US $ 17,033.33에 상당)

2) 乙회사 - 여아용 자켓 2,004벌 (금액 US $ 20,040에 상당), 여아용 조끼 5,016벌 (금액 US $ 25,247에 상당), 남아용 스키복 2,004벌 (금액 US $ 10,020에 상당)

3) 丙회사 : 여아용 자켓 2,200벌(금액 US $ 16,848.33에 상당), 남아용 자켓 4,200벌 (금액 US $ 36,400에 상당)

한편 被申請人은 위의 申請외 3개 縫製輸出業體에게 ① Nylon Taffeta에 Pearl Coating한 원단(Pearl Nylon라 칭함)과 ② T/C에 Pearl Coating한 원단(Pearl T/C라 칭함)을 공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위의 신청외 3개 縫製輸出業體는 피신청인으로부터 Pearl Nylon을

---

44) 大韓商事 仲裁院, 「仲裁」, 제 192호, 1988.1.

총 33.851야아드(금액 US $ 30,465.90에 상당), Pearl T/C를 총 4,100야아드 납품받아 봉제가공 후 輸出을 완료하였다.

② 紛爭內容

위의 輸出된 봉제품 중 Pearl Nylon으로 가공한 製品은 몇번만 입어보아도 마찰로 인하여 코팅이 벗겨지거나 세탁 후 코팅이 벗겨지는 결함이 나타났고 또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한 상태라는 항의와 함께 US $ 61,689의 크레임이 서독의 바이어로부터 申請人에게 제기되었다.

이에 신청인은 서독 바이어의 국내대리점으로서 서독의 바이어 뿐만 아니라 국내의 3개 縫製輸出業體로부터 본건 損害賠償請求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고 被申請人에게 被害에 대한 損害賠償 請求를 하기에 이른 것이다.

③ 兩當事者의 主張要旨

가. 申請人의 主張要旨

드라이 크리닝을 할 수 없는 製品인데도 드라이 크리닝을 하였기 때문에 코팅이 벗겨졌다고 하는 被申請人의 주장은 맞지 않는다.

다만 Pearl T/C의 경우는 드라이 크리닝을 하지 않으면 코팅이 벗겨지는 문네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는 원단의 종류에 따라서 코팅의 사용재료 및 방법을 달리 해야 했음을 나타내는 것인 바, 이 점에 대해서는 바이어측도 다소의 問題點을 認定하여 실제의 總 클레임 금액인 US $ 61,689중에서 US $ 40,000만을 청구하는 것이다.

나. 被申請人의 主張要旨

申請人이 被申請人의 하청공장을 방문하였을 때, Nylon Taffeta에 3회 코팅한 것은 가격이 맞지 않으니 2회 코팅한 것으로 바꿔줄 것을 요구하면서 신청인 자신도 코팅한 면의 접착성을 염려하여 드라이 크리닝이 불가능하며

물세탁시에도 30℃에서 하도록 하는 꼬리표를 각 商品마다 붙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었으나, 申請人이 제시한 SGS검사보고서에서 보듯이 당초 약속과는 달리 드라이 크리닝과 40℃에서 물세탁이 가능한 꼬리표를 붙인 것은 申請人과 서독 바이어의 큰 실책이다.

被申請人이 納品한 원단을 KOTITI에 서독의 검사방식대로 2회에 걸친 품질검사 결과 아무런 하자가 없게 나타났다.

가. 判定主文

1) 被申請人은 申請人에게 US $ 11,000의 원화 상당액금 8,776,900원을 은행도 어음으로 즉시 지급한다.

2) 위의 은행도 어음의 결제일은 한달 후에 위 금액의 반을, 두 달 후에 나머지 반을 결제하기로 한다.

3) 仲裁諸費用은 申請人의 부담으로 한다.

4) 申請人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나. 判定理由의 要旨

위 申請人의 請求에 대하여 申請人과 피신청인 당사자 쌍방은 판정주문과 같은 내용의 화해로써 이 사건의 해결을 원하여 이를 판정으로 내려줄 것을 구함으로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 제52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商事仲裁規則 제52조 (화해에 의거한 판정)

當事者가 仲裁節次 중에 화해를 하였을 경우에 당사자가 요구하면 중재인은 합의된 화해의 조항을 판정으로써 기재할 수 있다.

〈事例 2〉 계속 去來를 통한 解決-品質不良으로 인한 紛爭 事例[45]

① 去來 및 紛爭 提起經緯

㉠ 提起商事 : 호주의 C社

㉡ 被提起商事 : 한국의 甲社

㉢ 紛爭品目 : 紡(續) 絲(Yarn)

㉣ 紛爭原因 : 品質不良

㉤ 請求金額 : 호주 $ 35,623

韓國의 甲社는 1987년 3월경 호주의 C社로 부터 2차에 걸쳐 Polypyopylene Multi-Filament Yarn 6,200kg, US $ 15,500 상당의 取消不能 貨換 輸出信用狀을 받고 輸出 完了하였으나, Waxing or Oiling의 含量不足, 脫色(Colour Change)등에 따른 品質不良을 이유로 紛爭을 提起받았다.

② 提起者側 主張要旨

韓國의 甲社에서 供給된 Yarn은 Italy에서 供給된 Yarn에 비해 作業能率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甲社에서 供給된 Yarn은 Waxing 또는 Oiling이 不足하여 편직기에 걸리는 경우가 많고 Italy의 Yarn에 비해 30% 정도의 勞動時間이 더 소요됨에 따라서 甲社는 melbourne college of texile 硏究所의 檢定報告書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製造勞賃의 差異 A $ 11,894, 제직 LOSS A $ 20,484 및 脫色으로 인한 損害額 A $ 3,245을 합한 A $ 35,623을 賠償하여야 한다.

③ 被提起者側 答辯要旨

當社는 P.P.絲를 air texturing용으로 輸出할 당시는 호주 멜본시 B社로부터 하등의 異議를 받지 않으므로 本件의 提起商事인 C社가 기계 및 P.P.

45) 大韓商事 仲裁院, 「仲裁」, 제 203호, 1988. 12.

絲를 인수하였을 때 品質을 變化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었으며, 또한, C社도 Waxing이나 Oiling에 관해 특별히 要請한 事實이 없었다.

C社는 當社 供給社와 이태리社를 비교해서 品質의 差異가 있다고 하여 A $ 35,623의 크레임을 提起하고 있으나, 이태리 社와 當社 P.P.絲의 製造方法은 根本的으로 差異가 있다.

C社는 한때 當社의 Buyer였고, 現實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니 한편으로는 도의적인 責任을 느끼면서 C社가 脫色現狀으로 인한 損害額이라 主張하는 A $ 3,245만을 C사에 支給할 용의가 있다.

④ 處理結果

大韓商事 仲裁院은 當事者會議를 주시하여 本件크레임의 最終的인 解決을 위해 甲社가 C社에 A $ 7,000을 支給할 것을 合意하였으며, 合意金額은 次期去來를 통해 賠償토록 하는 方法이 採擇됨에 따라 持續的인 去來關係가 維持되었다.

⑤ 本 事例에 대한 의견

本件을 통하여 살펴본 바와같이 品質에 관하여서는 Buyer 相談時부터 이에 대해 協議토록 하여야 겠다.

〈事例 3〉 仲裁勸誘 - 在庫品輸出과 관련한 크레임 事例[46]

① 去來 및 紛爭 提起經緯

㉠ 提起商事 : 라이베리아의 F社

㉡ 被提起商事 : 韓國의 Y社

㉢ 紛爭品目 : T-Shirts

㉣ 紛爭原因 : 品質不良

---

46) 大韓商事仲裁院, 「仲裁」, 제 196호, 1988. 5.

㉣ 請求金額 : US $ 17,101

② 紛爭 提起經緯 및 提起者主張

라이베리아의 Y社는 1987년 11월 韓國의 Y社측으로부터 T-Shirts 2만개를 US $ 10,000에 수입하였으나 도착된 物品이 신품이 아니고 중고품이라는 사실을 Monrovia 소재 Lloyd's Agents의 檢査를 통하여 發見하고 大韓商事 仲裁院에 크레임 斡旋을 요청하는 것이다. 아울러 본분쟁과 관련한 입증서류(Lloyd's Agent가 발급한 survey report 및 해당 photographs)를 동봉하여 아래 산출근거에 따라 Y社側에 US $ 17,101을 청구한다.

20,000pcs. Tee shirts (not used) C.I.F.	US $ 10,000
Customs duty	US $ 6,000
Port charges, Transport labour and other expenses	US $ 1,000
Survey fees	US $ 101
Total claims	US $ 17,101

③ 被提起者의 答辯要旨

本社는 제기자측이 주장하는 분쟁 자체는 수락하나 US $ 15,000을 배상함으로써 최종해결코자 한다.

배상방법은 여자용 자동우산(재고품) 輸出시 할인코자 한다.

④ 處理結果

大韓商事仲裁院은 상기 국내당사자의 입장을 제기자측에 알려주면서 당사자간에 직접교섭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할 것을 권유하여서 원만히 해결을 보았다.

⑤ 本 事例에 대한 의견

本件과 같이 정상품이 아닌 중고품이나 혹은 在庫品을 輸出할 경우 賣買契約締結時 비정상품이 관한 근거조항을 명백히 해 둠으로써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3) 事例問題點

지금까지 살펴본 各 事例들에서 나타난 問題의 提起를 추론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問題點을 要約할 수 있다.

事例 1) 국내 3개 縫製輸出業體는 輸出品目을 독일의 G會社에 코팅원단을 輸出할때 원단의 종류에 따라 코팅의 사용재료 및 방법을 소홀히 함으로 品質不良 原因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豫防하지 못했다.

이 분쟁을 당사자간의 해결방법인 和解로서 해결하기 원하였는데 이에는 청구권의 포기등이 뒤따라서 第3者의 介入해결방법중 가장 많이 쓰이는 斡旋으로 하였으면 흡족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事例2) 韓國의 甲社는 호주의 C社에 Yarn(실)을 輸出하였다. 이때 waxing or oiling의 함량부족, 탈색 등에 따른 품질불량을 이유로 분쟁을 제기받았다. 우리나라의 貿易분쟁의 발생원인중 件數面에서 比重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품질불량의 對策으로서 품질관리담당자의 資質向上을 기해야 하겠다.

事例3) 韓國의 Y社는 라이베리아 F사에 T-Shirts를 수출하였는데 정상품(신품)이 아닌 중고품 혹은 재고품으로 수출을 하여 분쟁을 제기받았다. 또한 貿易去來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信賴關係인데 本 去來에서는 信義와 誠實의 原則이 결여되어 있다.

2. 數量紛爭 解決事例

(1) 數量의 결정방법

商品의 數量에는 貿易上으로 보면 確定數量, 條件附數量, 槪算數量, 包括數量의 네가지가 있다.

첫째, 確定數量이란 契約當初부터 當事者사이에 아무런 의문도 없이 周知된 表示方法에 의하여 確定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去來上에 確立된 慣習인 常例的인 數量單位와 數量用法을 채택하여 이에 의한 정밀한 계수평양측정에 의하여 契約한 總數量과 總金額을 算定하는 것으로써 일반의 商去來에서 볼 수 있는 常例的인 數量이다.

둘째, 條件附數量이란 契約의 目的物을 受渡하는 過程에서 발생될지도 모르는 근소한 數量差에 대하여 一定比率로 增減되는 것은 클레임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數量過不足容認條件을 붙여야 한다. 예컨대 5%의 과부족은 매도인의 임의로 한다 라고 기재하는 것과 같다.[47]

또한 그 增減의 責任을 전적으로 면제하고 當初의 契約數量으로 受渡시키는 「FRANCHISE(小損害負擔保·小損害免責, 면책비율)」 條件을 붙이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이와같은 수량차가 예견되는 物品의 去來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써 이러한 附帶條件의 特約에 의해서 契約數量에 관한 엄격한 구속이 상당히 緩和되어 契約의 成立이나 履行을 圓滑하게 한다.

셋째, 計算數量이란 契約의 成立에 있어 目的物의 受渡數量을 正確하게 나타낼 수가 없는 경우 약 5톤이라는 식으로 槪略의 數로써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船積數量條件이든 또는 揚陸數量條件이든 數量計算單位의 여

47) 國際慣習上 CIF契約에서는 「at seller's option」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數量의 增減은 賣渡人의 選擇件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FOB契約에서는 買受人이 運送契約을 締結하므로 그것은 買受人의 自由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하를 불문하고 生産, 包裝, 船腹, 기타 이유로 契約에서 정하여진 數量을 꼭 그대로 인도하기가 곤란한 경우 예컨대 광석,곡물등과 같은 부피가 큰 대량화물에는 契約을 締結할 때에 그 數量앞에 about 또는 approximately 등의 文字를 붙이는 것이 보통이다. 이 경우에는 商品의 種類 또는 商慣習에 따라 5%-10%정도의 過不足이 있더라도 무방하며 그것으로 契約을 완전히 履行한 것으로 간주된다.[48]

나) 事例

〈事例 1〉 우리나라의 A社는 스웨덴의 B社와 쉐타 200카톤 2,400타의 주문을 받아 輸出하였는데 B社는 168카톤에 대한 수량검사를 한 결고 50카톤에서 3타씩 부족하여 總 150打의 數量不足이 있었으니 總 3,600弗을 賠償하라는 분쟁을 提起하였다. A社는 B社에 대하여 數量不足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세관에서의 통관관계서류를 보내라고 요구하였다. B社는 A社의 요구에 따라 통관서류를 보내왔는데 여기에는 2,250打의 통관만이 記錄되어 있으므로 150打의 數量이 不足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A社는 계속 이를 否認하여 결국 當事者의 合意에 의하여 仲裁에 廻付되었다.

仲裁人은 쌍방의 主張을 듣고 提出된 증거서류를 調査하였는데 여기에서 크게 問題된 것이 A社의 스웨덴 주재원의 B社 앞 서신이었다. A社의 스웨덴 주재원은 B社의 數量不足紛爭에 대하여 回信을 보내는 書信가운데 「by our mistake」란 文句를 썼던 것이다. A社는 判定部의 審問이 계속되는 동안 위의 「by our mistake」는 B사와의 去來約束으로 씌어진 文句라고 主張하고 나섰으나 이를 뒷받침 할 만한 證據가 없어 貫徹되지 못하였고 結局 仲裁人은 A社에게 B社의 請求대로 3,600弗을 支拂하고 仲裁費用도 負擔하라고 判定하

48) 金容福, 「貿易實務」, 博英社, 1991, pp. 46-47 참조.

였다.[49]

이 事例에서 「by our mistake」가 主要한 原因이 되고 있으나 副次的으로 指摘될 수 있는 것은 A社가 주재원에게 너무 많은 權限을 賦與해 왔다는 事實이다. 분쟁이 發生하여 紛爭으로 비약한 경우에는 주재원은 恒常 本社와 긴밀한 連結을 維持하여야 하며 독단적인 행동은 삼가해야 함을 이 事例는 보여 주고 있다.

〈事例 2〉

1) 去來 및 紛爭發生 經緯

사우디아라비아의 A社는 우리나라의 甲社로 부터 Men's Acrylic Underwear Set 750 dozs.를 輸入契約을 締結한 후 關係 信用狀을 開設하였다. 그러나 物件이 到着한 후 檢數를 하여보니 相當量이 不足함을 발견하고, 즉시 甲社에게 通報하여 그 解決策을 의논했으나 甲社는 Lloyd's의 檢査報告書를 첨부하여 분쟁을 請求하면 檢討해 보겠다는 通知를 해왔다. A社는 物件의 總價格이 불과 US $ 22,050 밖에 되지 않는데 비해 Lloyd's에 檢査料는 US $ 1,000에 가깝고 더구나 A社 所在地 근처에는 Lloyd's 檢査機關이 없기 때문에 現地에 있는 公認된 檢査機關의 檢査報告書로 대신하겠다는 通報를 하였다.

그 후 甲社로 부터 아무런 소식이 없자 A社는 A社 所在地域의 檢定機關의 檢査報告書를 첨부하여 US $ 2,063.20을 청구하는 분쟁의 解決을 當 仲裁院에 要請하여 왔다.

2) 申請人의 主張要旨

---

49) 申鉉周, 梁承穆, 「貿易클레임과 事例」, 대한상공회의소, 1971, pp. 38-39.

申請人은 當 仲裁院에 解決依賴한 제기서안에서 다음과 같이 申請理由를 밝혔다.

① 첨부된 檢査報告書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62.5dozs.가 不足하였다.(US $ 1,837.50)

따라서 이 物量에 대한 關稅 US $ 73.50와 檢査料 US $ 100.51, 기타 費用 US $ 51.69를 합하여 總 US $ 2,063.20을 請求하였다.

② 當社로서는 買受人으로서, 또 분쟁 提起者로서 모든 法的 義務를 다함과 同時에 그동안의 去來關係 등을 고려하여 當事者間에 우선적인 解決을 도모코자 努力하였으나 甲社는 Lloyd's의 檢査報告書를 要求하는 등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며 분쟁 解決을 기피했다.

③ 더구나 檢査報告書上에 나타난 바와 같이 檢査當時 상자들의 포장상태에는 瑕疵가 없었음에도 數量이 부족한 것은 이미 包裝時에 적게 包裝한 것이 分明함에도 甲社는 억지로 保險會社에게 責任을 전가하려 했다.

④ 不足되는 數量의 量이 이미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을 감안 할때 故意的인 결손량을 내고도 이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상도의상 용납될 수 없는 처사이다.

3) 被申請人의 主張要旨

本件 분쟁을 접수한 當 仲裁院에서는 甲社에게 이에 대한 答辯을 要請한 결과 甲社는 자신들이 요청한 Lloyd's의 檢査를 해오지 않았다는 理由와 仲裁院에 분쟁을 申請한 날짜가 物品을 受領한 날짜로부터 6個月이 經過하여 合理的인 提起期限을 넘겼다고 주장해 왔다. 아울러 申請人이 보내온 檢査報告書는 申請人이 現地에 있는 檢査機關으로서 自國人에 의한 檢査報告書는 믿을 수 없다고 항변하면서 甲社가 자신들의 工場에서 確認한 결과 절대

로 부족하게 싣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4) 處理經緯

甲社로부터 上記와 같은 內容의 答辯을 접수한 當 仲裁院에서는 甲社에게 다음과 같이 說明하면서 答辯書를 修正해 올 것을 要請했다.

① Lloyd's의 檢査報告書를 作成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同 報告書를 認定할 수 없다는 것은 일면 타당성이 있는 것 같지만 A社의 2차회신(Lloyd's 檢査報告書외에 다른 機關에서 作成한 檢査報告書를 대체하자는 提議)에 대한 回答을 하지 않았다.

② A社가 指示한 檢査報告書를 無條件 不信할 것이 아니라 不信하는 原因, 예를 들면 檢査過程이 잘못되었다든지 하는 具體的인 檢證을 提示해야 한다.

③ 紛爭 提起期限이 經過했다는 主張은 A社가 物件을 받자마자 1次 통보를 했으며 후일 그 立證資料가 늦게 도착했다고 해서 (그것도 當事者間에 立證의 方法에 대해 異見이 있었는데) 분쟁 提起日字를 立證資料가 도착한 날짜로 본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甲社는 이러한 仲裁院의 논지에 수긍을 하고 만일 A社가 보내온 檢査報告書를 그대로 믿는다면 過失은 자신들의 工場에게 있다는 것을 시인했다. 그후 甲社는 工場에 가서 다시 檢査를 해 보았으나 확실한 事實은 파악하지 못했다. 실제로 甲社는 自體工場을 갖고 있지 않으며 本製品은 下請工場을 통해서 나갔는데 最終 包裝時에 檢査를 소홀히 했던 것만 나타날 뿐이었다. 결국 甲社는 申請人의 主張을 반박할 자료가 없으므로 申請人에게 解決案으로서 提起金額의 半은 現金으로 나머지 半은 次期 去來에서 보상하는 方法을 提示했던 바, A社가 이를 受諾함으로써 本件은 當事者間에 원만히 解決되었다.[9]

(3) 事例問題點

事例1) 韓國의 A社는 스웨덴의 B社로부터 쉐타를 주문받아 수출하였는데 B社의 數量檢査 結果 주문량보다 수량이 부족하게 나타났다. 이로인해 B社는 韓國의 A社에 분쟁을 제기하게 되었다. 이 사례에서는 수출전의 철저한 수량검사가 부족하였고, 또한 仲裁에 廻付되기 이전에 雙方間의 調整으로서 제3자를 개재시키지 않고 분쟁해결에 대한 적극적 자세를 가지고 紛爭을 당사자간에 해결하였으면 흡족한 결과를 얻었을 것이다.

事例2) 韓國의 甲社는 사우디 아라비아 A社에 남자 상의 옷을 수출하였는데 물품 도착후에 A사는 검사를 해보는데서 상당량의 물품이 부족하여 클레임을 청구하였다. 甲社는 下請工場을 통해서 물품이 나갈때 包裝시 檢査를 소홀히 하여 분쟁 請求를 당하게 된 것이다.

또한 本 事例의 申請人의 主張要旨에 나타난대로 상대방에게 트집을 잡아 이득을 취하려고 紛爭을 提起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豫防策으로 信用狀條件에 맞는 성실한 履行, 契約條件의 철저한 履行 등 악덕업자에 의한 Market Claim對策을 강구했더라면 本 事例에서 발생한 紛爭을 방지했을 것이다.

3. 船積紛爭 解決事例

(1) 船積措置의 範圍

船積과 관련된 클레임에는 크게 나누어 時期的으로 船積을 지연시킨 船積遲延과 아예 船積을 하지 않은 船積不履行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50]

---

50) 大韓商事仲裁院, 「仲裁」, 第167號, 1985. 12. pp. 35-36.
51) 朴大衛, 「貿易實務」, 法文社, 1992, pp. 636-637.

① 船積遲延(Delayed Shipment)

契約上이나 信用狀에 명시된 船積期間內에 船積을 행하지 못하고 遲延된 결과 船積期限이 경과된 후에 선적된 것에 대한 클레임인데 商品에 따라서 크레임의 정도가 다르다. 예컨데, 계절을 타는 商品은 일정한 期間內에 도착하지 않으면 판매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流行에 대한 민감도 때문에 商品의 價値를 잃게 되어 상품대전과 기회비용 등을 따져 클레임이 큼직하게 提起되기도 한다.

② 船積不履行 (Non-Delivery)

契約時보다 商品의 價格이 올랐거나, 原資材의 價格이 폭등하여 채산이 맞지 않을 경우에 클레임을 당할 것을 예상하고 고의적으로 하는 행위에 기인한 크레임이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供給이 제한되어 있는 商品을 다른 顧客에게 販賣하기 위하여 이른바 Non-Delivery를 내는 경우도 있다. 契約時에는 해당지역에 輸出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政治的 事情으로 인해 船積할 意思는 있어도 선적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2) 事例

〈事例 1〉

船積不履行

1) 去來 및 提起經緯

홍콩의 A社가 1984年 12月初에 우리나라의 甲社로부터 US $ 7,566.20 상당의 女性衣類를 輸入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關係信用狀을 12月 20日 경에 開設하였다. 그러나 이 信用狀을 接受한 甲社는 船積期日을 2次에 걸쳐 연장하여 줄것을 要請하였는 바, A社는 甲社의 要請대로 延長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甲社가 同 物品의 船積을 履行하지 않자, A社는 결국 當

仲裁院에 이의 解決을 의뢰해 왔다.

2) 申請人의 主張要旨

① 本件 契約은 12月初에 Telex로 締結되었고 이에 따라 當社는 信用狀을 開設했다.

② 本來의 船積期日은 198×年 1月 5日 이었으나 甲社의 몇번에 걸친 要請에 의해 同年 1月 10日과 1月 20日로 2번 연장하여 주었다.

③ 그러나 위 期間이 지난후에도 甲社는 船積을 할 수 없음을 통보해 옴으로써 當社의 國內 實需要者로부터 紛爭을 提起받고, 本 主文은 取消당하였다.

④ 따라서 當社는 本件 船積不履行에 대해 國內 實需要者로 부터의 紛爭補償額 및 本件 去來로 발생된 諸費用(信用狀 開設費用 등)을 합쳐 總 契約金額의 20%에 該當하는 US $ 1,513.20을 請求한다.

3) 被申請人의 主張要旨

① 本件의 船積基日이 198×年 1月 5日임에도 불구하고 當社는 前年 12月 27日에 信用狀을 받았고 1月 2日에 Color Detail을 받았으므로 부득이 船積期日 延長을 要請하였으나, 이 要請에 대한 確答도 없다가 要請한 船積日字의 하루전에 直接 期日延長 通報가 왔다.

② 이 하루만의 날짜로는 作業을 完了할 수 없었으므로 다시 20日間의 연장을 要請하게 되었다.

③ 그러나 이 延長要請에도 어떤 確答이 없어 18日이 경과한 후에야 延期通報가 當社에 接受되었으므로 도저히 船積을 할 수 없었다.

④ 當社가 A社의 信用狀 變更의 確定通報가 없으면 作業을 進行시킬 수 없었던 理由는 以前 去來에서도 그러한 通報없이 作業을 進行시켰다가 信用

狀 變更이 되지 않아 船積을 못한 적이 있었다.

⑤ 따라서 當社로서는 本 件 船積을 履行하지 못한 責責事由가 當社에 있지 않고 A社에 있으므로 當社로서는 本件 紛爭을 受諾할 수 없으나, 그 동안의 去來關係등을 考慮하여 信用狀 開設費用 정도 선에서 本件을 解決코자 한다.

4) 處理經緯

被申請人의 答辯書를 接受한 當 仲裁院에서는 이러한 事實을 A社에게 통보한 결과 A社가 이를 受諾함으로써 本 件은 원만히 解決되었다. 本 件에서 볼때 甲社가 相對方의 確答이 있어야만 作業을 進行시킬 수 있었다면, 이러한 內容의 趣旨를 延期要請時에 挿入하였어야 去來慣例에 맞는 것으로 사료된다.[52]

〈事例 2〉 船積書類 未備[53]

· 提起商社 : 홍콩의 F社

· 被提起商社 : 韓國의 G社

· 紛爭品目 : Rayon jacquard (人造絹絲)

· 請求金額 : US $ 29,000

1) 去來 및 紛爭經緯

提起商社인 홍콩의 F社는 1982年 3月 2日, 100% Rayon Jacquard 50,000 Yards를 輸入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G社와 직접 賣買契約을 締結하였다.

---

52) 大韓商事仲裁院, 「仲裁」, 第157號, 1985. 2, pp. 38-39.
53) 大韓商事仲裁院, 「仲裁」, 第137號, 1983. 6, pp.32-33 자료참조.

상기 賣買契約에 의거하여 F社는 1982年 3月 10日 關係 信用狀(金額 US $ 725,000)을 賣買契約 當事者인 G社 앞으로 開設하였다. 그러나 F社는 輸入物品의 數量 및 品質保證을 위해 信用狀 條項中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提起商社의 指定人 M씨가 作成한 Inspection Certificate를 船積書類에 包含시킨다는 特別條項을 挿入하였다. 皮提起商社인 G社는 信用狀上에 明示된 4회分割船積條件에 따라 1982年 4月 24日에 第1次 船積, 1982年 1月 30日에 第2次 船積, 그리고 1982年 5月 15日에 第3次 船積, 最終的으로 1985年 5月 20日에 第4次 船積을 完了했다. 提起商社는 우리나라에 所在하는 指定 Inspector로부터 마지막 船積分은 자기가 調査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被提起者側에 問題된 物品을 船送해 갈 것을 촉구하였으나, 이에 被提起商社가 응하지 않자 本件 解決을 위한 斡旋書類를 當仲裁院에 해왔다.

2) 提起商社의 主張要旨

提起商社는 第1次에서 第3次까지의 船積品은 自社의 지정 Inspector인 우리나라의 M씨가 Inspection Certificate 상에 검거후 署名捺印하였기에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마지막 船積分은 被提起商事측에서 虛僞로 署名捺印하였으므로 船積한 契約物品이 어떤 種類의 物品인지를 알기가 힘들고, 數量 및 品質의 비정상적일 수가 있으므로 輸入地 선박회사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契約物品을 인수할 수 없다고 하고 ,虛僞署名 사실은 이미 신용장 開設銀行에 통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본건 해결을 위해 被提起商事측에서 문제된 物品의 送狀價額(US $ 29,000)을 辨償하여 준다면 문제된 물품을 被提起商事측에 送付하여 주겠다고 알려왔다.

3) 被提起商事의 主張要旨

被提起商事측에서 最終船積分에 대하여 Inspection Certificate를 허위로

작성한 것은 사실이다. 그 주된 이유는 船積期日이 到來되어도 契約物品의 國際市勢下落으로 提起者인 F社가 지정 Inspector를 사주하여 故意로 Inspection을 기피하였기 때문에, 관계 銀行에 船積서류를 賣渡하기 위하여 虛僞로 檢査書를 작성하였다. 提起者측에서 US $ 29,000을 解決金額으로 주장하면서 문제된 물품은 被提起商事의 비용으로 送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로 契約物品의 輸出價格과 製造價格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에 US $ 29,000을 提起商事측에 辨償支給하고 送付해 온다면 비싼 代金을 支給하고 役輸入하는 結果가 되기 때문에 不當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提起者측에서 우선 輸入地 창고에 보관된 문제의 物品을 引受한 후에, 被提起商事의 참관하에 提起商事측에서 재검사하였을 때 만약 數量 및 品質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提起者가 청구한 US $ 29,000을 支給하겠다.

4) 處理結果 및 檢討意見

仲裁院은 被提起商事에서 제시한 상기 해결책을 提起商事에 전달해 줌과 동시에 본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被提起商事와 다시 한번 접촉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후 提起商事측에서 仲裁院 앞으로 별다른 通知가 없는 것을 볼 때 본건은 원만히 해결된 것으로 사료된다.

본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信用狀條件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紛爭이 발생하는 경우 불리한 立場에 직면하게 된 것을 미루어 볼때, 代金決濟가 信用狀에 의해 행해질 경우에는, 賣買契約과 信用狀去來는 별개의 去來라는 信用狀의 獨立抽象性을 염두에 두고 信用狀條件을 충실히 이행하여야만 된다고 생각한다.

(3) 事例問題點

事例1) 韓國의 甲社는 홍콩의 A社에 여성의류를 수출하기로 계약을 締結

하였다. 甲社는 A社에게 船積期日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A社가 이를 승락하였음에도 甲社는 物品의 船積을 履行하지 않아 국내의 실수요자로 부터 클레임을 제기받고 本 主文은 취소되었다. 또한 이 사례에서 볼 때 契約을 締結하는 段階에서 부터 履行能力을 고려하여야 하겠다.

事例 2) 本 事例에서는 信用狀 條件을 충실히 履行하지 못함으로 분쟁이 발생하였다. 代金決濟가 信用狀에 의해 행해질 경우 賣買契約과 信用狀 去來는 별개의 去來라는 信用狀의 獨立抽象性을 염두에 두고 信用狀 條件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와같이 각 事例의 問題點을 요약한 바 대부분의 問題의 提起는 品質管理 및 關係貿易法規의 이해부족과 信義와 誠實性의 부족, 분쟁해결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로 인한 쌍방간의 금전적, 시간적 불이익을 招來한다고 볼 수 있다.

第5章 要約 및 結論

本 硏究 內容의 要約 및 結論은 다음과 같다.

1. 品質向上

Claim 類型 가운데 품질에 관련한 분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商品의 質을 높이고 對外信用을 增進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2. 契約締結의 愼重

契約締結은 반드시 書面으로 하며 契約締結前 전문인의 法律諮問을 받아 有利한 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계약체결에서부터 履行終了과정까지 잠재적 분쟁요소가 많으므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講究함과 동시에 국제간 去來慣習, 국제무역관계법규 등을 熟知하여야 한다. 효율적인 紛爭을 事前에 마련함으로 분쟁을 방지할 수 있고 분쟁요소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3. 契約履行의 徹底

계약이행은 誠實하게 추진되어야 하며 계약불이행은 輸出履行上 전과정에서 일어난다. 대외 수출시장의 여건이 급변하므로 품질에서부터 수량, 수수료, 대금결제, 선적까지 모든 事項에 대하여 철저한 이행이 필요하다.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履行을 하지 않는 경우 意圖的 Claim과 Market claim을 제기당하기 쉽다. 품질, 수량, 선적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履行이 분쟁을 事前豫防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

貿易은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賦存資源이 부족한 國家에서는 重要한 意味를 가진다. 즉 한 國家의 經濟나 이러한 國家들로 이루어진 世界經濟가 資

源의 最適分配와 活用을 目的으로 움직이므로 우리나라에서 풍부한 經濟資源을 부족한 國家들에 供給하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부족한 資源을 外國에서 供給받음으로써 效率的인 經濟運用이 可能해 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國際貿易에서 製品의 質을 높이고, 原價를 절감하고, 마아케팅을 잘하여 좋은 價格으로 훌륭한 製品을 船積하였어도 몇가지 단계의 마무리가 되지 않아 商品의 代金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든지 또는 받은 商品代金을 분쟁으로 辨濟해야 한다면 이제까지의 모든 努力과 수고가 수포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長期的으로 건전한 商去來를 영위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貿易量의 팽창과 더불어 무역분쟁인 계약 불이행 및 하자발생 등에 의한 紛爭件數는 매년 增加一路에 있으므로 분쟁을 解決할 수 있는 一般的인 知識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意味에서 본 논문에서는 특히 의류제품 貿易去來시 발생하는 貿易紛爭의 해결사례를 품질불량, 수량, 선적에 관련한 유형별로 考察해 보았으며, 이러한 분쟁 해결사례를 통하여 解決方案도 考察해 보았다. 貿易去來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國內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國際的으로 이루어지게 되므로 貿易紛爭이 提起되었을 경우에는 紛爭을 提起당한 當事者뿐만 아니라 크게는 국가의 이미지 까지도 실추당하게 되며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도 저해받게 된다.

특히 衣類製品 貿易去來에 있어서 紛爭을 事前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品質狀態, 數量, 船積 등에 세심한 주의와 노력이 따라야 하며 철저한 品質管理 및 納期遵守를 통하여 우리나라 製品의 해외신용도를 提高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만약 衣類製品 貿易去來시 紛爭이 提起되었을 때에는 보다 合理的으로 問

題解決에 노력하면서 當事者間의 對立은 피하고 相對方과의 信賴와 誠實을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신속한 방법으로 衣類製品 貿易紛爭을 해결함으로써 기업의 이미지와 나아가서 信用狀態를 良好하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貿易去來 當事者중 어느 한쪽만 성실하다고 해서 무역분쟁이 발생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衣類製品 貿易去來시 紛爭이 발생되지 않도록 상호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분쟁 해결에 대한 적극적 자세와 商事仲裁의 효율적 활용과 貿易紛爭에 대한 多角的인 檢討 및 對策이 모색되어져야 하겠다.

1978.

13. 朴根哲, 「貿易클레임 現況 및 解決制度에 관한 硏究」, 碩士學位論文, 高麗大學校 經營大學院, 석사학위논문, 1981.

14. 朴大衛, 「貿易實務」, 法文社, 1992.

15. 申鉉周, 梁承貌, 「貿易클레임과 事例」, 大韓商工會議所, 1971.

16. 吳世昌, 「貿易實務論」, 朴英社, 1990.

_____ , 「무역클레임론」, 삼영사, 1988.

17. 오세경, 「소법전」, 법전출판사, 1992.

18. 張到順, 「국제비지니스 커뮤니케이션論」, 誉雪出版社, 1984.

19. 張大永, 「仲裁」, 제30호.

20. 錢昌源, 「신고 新貿易實務」, 日新社, 1991.

21. 鄭冀人, 「商事仲裁論」, 貿易經營社, 1984.

_____, 「韓國商事仲裁制度의 效率的 運營을 위한 硏究」, 成均館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82.

22. 蔡点吉, 「貿易클레임의 解決에 관한 制度的인 硏究」, 碩士學位論文, 延世大學校 經營大學院, 1982.

23. 崔章鎬, 「貿易클레임 處理와 商事仲裁의 問題點」, 高麗大經營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76.

24. 최기원, 「한국기업의 해외진출에 따르는 국제간 분쟁해결을 위한 국제상사 중재제도에 관한 연구」, 「법학」 제19권 1호, 서울대법학연구소, 1978.

25. 최희재, 「韓國의 상사중재제도에 관한 연구」, 釜山大學校 碩士論文, 1983.

26. 大韓商事仲裁院, 「仲裁」, 제137호, 1983. 6.

_____, 「仲裁」, 제157호, 1985. 2.

_____, 「仲裁」, 제167호, 1985. 12.

_____, 「仲裁」, 제192호, 1988. 1.

_____, 「仲裁」, 제196호, 1988. 5.

_____, 「仲裁」, 제203호, 1988. 12.

27. 「纖維製品輸出現況」, 韓國纖維製品輸出組合, 1991.

28. 한국무역협회, 「수출통계」, 1991.

_____, 「수출입업무요람」, 1987.

29. KIET, 業體說問調査結果, 1988. 7.

國外文獻

30. Alanl. widiss, Arbitration on commerical disputes, Insurance, and Tort Claims, practising Law Institute, 1979.

31. Charleworth's Merchantile Law, elevents edition clive M, Schmitthoff, LL, D, & David A.G. Sarre, M.A., Stevens & Sons, London, 1967.

32. Clive M, Schmitthoff, The Export Trade, Stevens & Sons Ltd London, 1969.

_____, The Sale of Goods, London, Stevens & Sons Limited, 1966.

33. JCA Journal 79, March.

34. Martin Domke, Commercial Arbitration, Garriel M, Wilner, callaghan company, 1968.

35. _____ , The Law and practice of commerical Arbitration callaghan & Co.,

36. Robert Coulson, Business Arbitration,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1980.

37. V.W. Rangel, Brazil National system of Arbitration, Year book Commercial Arbitration Volume Ⅲ, 1978.

38. 津田昇, 「貿易クレノムの研究(上)」, 通商産業調査會, 1964.

39. 森井清, 「國際商事仲裁」, 東洋經濟新聞社, 1970.

_____, 「國際商事仲裁研究」, 1970.

_____, 「貿易クレームと對策」, 東京 : 日本經濟新聞社, 1976.

40. 早川廣中·小林甫·「現代貿易の知識」, 東京, 廣文社, 1979.

41. 「貿易と法律(貿易實務講座)」, 有斐閣, 1970.

Abstract

A study on examples of settlement to trade disputes in clothing products

IEE, JAE HA

Department of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Han Sung University

The number of items of disputes, which are caused by nonfulfillment of contracts and breach of contracts - a trade dispute, has been increasing, while the volume of trade has been expanded. Therefore general knowledge being able to settle the trade disputes is needed keenly.

This thesis classified the examples of settlement to trade disputes happening in trade of clothing products into the forms of inferiority of quality, volume and shipping, and then I considered them and inquired into solutions through the examples of settlement to trade disputes like these.

As trade is not carried out in home simply but carried out

internationally, the nation as well as the party, which a trade dispute is instated to, loses their prestige and their stable economic growth may be blocked when a trade dispute is instated.

To prevent trade disputes from arising in trade, especially trade of clothing products, they should pay close attention to the state of quality, volume, shiping and so on, and should heighten credit rating of our products from foreign countries through quality control and observance to the date of payment.

If a trade dispute about clothing products happens, the parties concerned had better try to settle the dispute reasonably, avoid confrontation and efficiently and rapidly the foundation of trust and sincerity.

As they do so, it is desirable that they deep good credit rating and good image.

We can not say that a trade dispute will not happen because only one party in parties concerned is sincere. Therefore it is important that two sides cooperate together. And also they had better have positive attitude toward settlement of trade disputes and use a commercial arbitration efficiently.